



산별노조(연맹)·지역본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2023년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접선거
16개 지역본부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직접선거

2023. 8. 28.

이 안내서는 민주노총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선거관리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선거관리규칙 제·개정 권한이 있는 중앙선관위가 의결한 이 안내서에 따릅니다.

※ 민주노총 규약 3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 3. 선거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16층,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홈페이지 <https://election.kctu.org>
- 이메일 election@kctu.org
- 전 화 02-2670-9191
- 팩 스 02-2670-9213
- 명부등록확인 1522-2220 (10/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사말



2014년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가 처음 시행되었고 2017년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때는 모바일투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3기 직선을 거쳐 이번에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4기 임원 직접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1기(직선 4기)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과 임기를 같이하는 지도부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다는 결심으로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을 이끌 사명을 갖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기 민주노총 임원 직선의 구호를 120만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를 담아 ‘투표가 곧 투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20만의 선택’ 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권리와 의무의 일치라는 원칙하에 규정개정을 통해 선거권 부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부위원장 선출 일정 변경등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맹, 산하조직의 동시선거도 함께 진행되면서 실무적인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물론 가맹, 산하 선관위원 동지들과 실무책임 동지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4기 직선을 차질 없이 치러낼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만큼 120만 조합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만들어 낼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표에 압도적인 투표율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각급 선관위원 동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본 안내서가 2023년 임원 직접 선거의 방식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본 안내서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신 민주노총 선거관리지원팀, 가맹과 산하 조직의 직선제 담당자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 8. 28.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선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책	이름	비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금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해철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진강필	
금속노조	총무실장	강지현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김경규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오희정	선관위사무국장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선관위원장
언론노조	해럴드지부장	이재원	
전교조	부위원장	문병모	
화섬식품노조	수석부위원장	신귀섭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	우상국	
경기본부	수석부분부장	한규협	
인천본부	회계감사	방영일	
강원본부	수석부분부장	유찬봉	

2023 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사무안내서 목차

2023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개요	05
2023직선 투표방법 개요	06
2023직선 핵심 제도 알아보기	07
2023직선 선거권 부여 기준	09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동시선거	12
전체 선거일정 개요와 근거 선거관리규정	13
선거일 전 날짜별 선거사무	15
선거일 기간 세부 선거사무 _ 현장투표	59
선거일 기간 선거사무개요 _ 전자투표	69
연장투표 선거사무	75
현장투표의 개표 선거사무 개요	79
일부재투표 선거사무	85
결선투표 선거사무	89
2023 직선 주요 Q&A	93

2023 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개요

16개 산별노조(연맹), 120만 조합원이 모두 직접 아래와 같이 동시선거를 진행합니다

선출대상

- 민주노총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 민주노총 산하 16곳 지역본부 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

후보등록기간

- 2023년 10월 22일(일) 09:00 ~ 10월 26일(목) 18:00
- ※ 기간 내 후보 미등록 시 후보등록 마감일 3일 연장

선거운동기간

- 후보등록 마감일 24:00 ~ 11월 20일(월) 24:00

선거일

- 2023년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7일 간
- ※ 당선자공고 · 연장투표공고 · 일부재투표공고 · 결선투표공고
11.28(화) ~ 11.30(목) 중

임 기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투표방법 개요

120만 조합원이 아래 투표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직접선거를 진행합니다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민주노총이 보낸 모바일 메시지 속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기표

- ※ 민주노총에서 7일 간 매일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합니다(단, 투표 완료자는 다음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제외)
- ※ 2G폰이나 인터넷 차단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투표 불가합니다
- ※ 모바일 메시지 발송비는 민주노총이 부담합니다

ARS투표

민주노총의 안내전화를 받아 그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및 기표

- ※ 민주노총의 안내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안내전화를 한 번 더 합니다
- ※ 민주노총에서 7일 간 매일 안내전화를 합니다(단, 투표 완료자는 다음 안내전화 시 제외)
- ※ 안내전화비는 민주노총이 부담합니다

이메일투표

민주노총이 보낸 이메일을 열어 본인인증 및 기표

- ※ 해외근무자와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단위조직(투표구)의 휴대전화 미소지자에 한합니다
- ※ 민주노총에서 7일간 세 번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현장투표



단위조직이 공지한 일시장소에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서명 뒤 투표용지에 기표

- ※ 선거인 수 11인 이상 투표소부터 현장투표 가능합니다
- ※ 투표소별 선관위원 명단과 투표장소별 투표 일시를 본 안내서에서 정한 시한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못해 실질적 현장투표 관리가 어려운 곳은 전자투표(모바일투표 · ARS투표) 실시로 전환됩니다

우편투표



민주노총이 사전에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우편회송

- ※ 구속자, 장기 항해 선원 등 선거기간 내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모바일 메시지 · 전화 · 이메일 송수신도 불가능한 경우, 혹은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단위조직(투표구)의 선거인 중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023 직선

핵심 제도 알아보기



제 도	2023 직선제
<p>선거인명부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필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 누락자 방지, 조합원에 대한 1:1 선거 및 후보 홍보, 전자투표 상시 전환을 위해 모든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의무 등록받음.(개인정보보호법 및 노조법 검토 완료) 단,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이 곧 선거권 박탈은 아님 ●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절대 취합하지 않음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목록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누구라도 열람 불가하게 암호화 저장 시스템 구축 ● 조합원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명부를 산별노조(중앙)나 연맹에 제출하지 않고 단위조직(단위노조)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산별노조(연맹)와 협의) ● 2020년 선거 당시 80만명 이상의 휴대전화번호 취합했음. 클라우드서비스 사용, 자체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휴대전화번호 암호화 저장, 계정별 권한 관리 등 강력한 보안 조치를 통해 1건의 유출 사고도 없이 직선을 완료하고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폐기함
<p>선거인명부 취합·확정 기간(약 60일) 및 누락자 방지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명부 등록 (8.28 ~ 9.22) ● 전 조합원 명부 확인 URL 모바일 메시지 발송 ● 명부 등재 확인 ARS 전화 운영 ●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 및 재심 신청에 따른 명부 정정 ● 명부 누락자 최종 구제에 따른 명부 정정 ● 선거인명부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 등재 확인 URL 및 ARS 전화는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 구제 신청 마감일까지 유지·운영
<p>의무와 권리의 일치 완성 _ 선거권 부여 기준 최종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단위조직 별 맹비 납부현황 보고에 따른 단위조직 별 선거권 부여 ● 2023년 6월분 ~ 9월분 중 마지막 월분 납부자 수를 각 단위조직 별 선거권자 수로 인정함 ● 임금받지 못하는 사유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선거권 부여 ● 손배가압류·대량해고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중집 의결로 선거권 제한 유보 ● 가맹조직을 통해 미납분에 대한 분납계획서 제출 시 선거권 제한 유보 ● 축소납부 단위조직은 최근 6개월분 맹비 납부 평균 인원만 선거권 부여
<p>현장투표 관리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소 선거인이 11인 이상이어야 현장투표 실시 가능 ● 현장투표 관리자인 현장선관위원(선거사무원) 미선정 또는 미보고 시 전자투표로 강제 전환 조치 ● 현장투표의 일시장소 미의결 또는 미보고 시 전자투표로 강제 전환 조치

안정적인 전자투표 시스템

- 민주노총서버, 전화국서버, 외부업체서버 등 물리적 서버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AWS)를 이용한 전자투표 시행으로 트래픽 장애 방지
- 클라우드 서버에 모바일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구축
- 모바일투표 시스템 매일 24시간(0시 ~ 4시 제외) 운영, 투표 제약 조건 최소화
- 모바일투표 시 모든 선거인에게 개인별 고유한 투표 접속주소(URL) 부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절차를 시행해 대리투표 가능성 최소화
- 모바일메시지 발송 등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사무실 내 전용 컴퓨터에서만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적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
- 단위조직 동시선거를 포함한 모든 전자투표 비용은 민주노총이 부담함

보다 강화된 참정권 보장장치

-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단위조직(투표구)의 휴대전화 미보유 조합원은 이메일투표 허용, 휴대전화와 이메일 둘 다 없는 조합원은 우편투표를 허용
- 현장투표소 설치하기 힘들고 모바일·전화·인터넷 송수신도 불가능한 조합원에게 우편투표 허용
- 현장투표를 신청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전체 선거일이 남아있을 경우) 전자투표로 긴급 전환 가능
- 결선투표 시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재수립하기 힘든 곳은 전자투표로 긴급 전환 가능
-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팸 차단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들

- 민주노총, 민주노총지역본부, 민주노총지역지부(직선제 채택하는 경우), 산별노조(연맹), 단위조직(단위노조)이 민주노총 직선 시스템을 활용한 동시선거가 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장투표소 선관위원 미선정 또는 미보고에 따른 전자투표로의 강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자 재적에서 제외 조치
- 현장투표의 일시장소 미의결 또는 미보고에 따른 전자투표로의 강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자 재적에서 제외 조치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선거일 종료시까지 조합탈퇴·징계에 따른 선거권 박탈자의 재적 제외 조치 상시 가능
- 전자투표(모바일·ARS)의 본인인증 완료 뒤 투표 중단 상태에서 최종 선거일 종료될 시 투표율에는 산입되고 무효처리 집계 제도화
- 선거일 기간 전자투표(모바일·ARS)의 미투표자 목록(전화번호 제외)의 산별노조(연맹) 또는 지역본부에 제공 가능 (공식 요청 및 중앙선관위 의결을 전제로)
- 산별노조(연맹)마다 조합원 근무 환경을 고려해 모바일 메시지 발송 및 ARS 투표 안내 시간대를 달리 적용.
- 선거일 기간 가맹조직별, 지역본부별, 단위조직별, 투표소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선거일 기간 종료 날 오후 투표율 50% 미달 시 1일 내지 5일 한도 내에서 중앙선관위 직권으로 전국 또는 특정 지역 연장투표 실시

2023 직선

선거권 부여 기준



| 근거 규약 및 규정 |

규약 제53조(맹비)

- ② 맹비는 가맹조직이 보고한 단위조직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가맹조직은 단위조직이 납부한 맹비를 익월 말일까지 민주노총에 납부한다.

규약 제60조(권리의 제한)

- ① 가맹조직이 맹비를 3개월을 초과하여 누적 미납할 경우, 그 조직과 대표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단위조직이 맹비를 3개월을 초과하여 누적 미납할 경우, 그 조직과 대표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 ③ 조합원이 단위조직 또는 가맹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 ④ 권리 제한 또는 권리 제한 유보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회계규정 제15조의4(납부유예와 분할납부)

- ① 장기파업 · 정리해고 · 계약해지 · 직장폐쇄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맹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당월 정상납부가 어렵거나 기존 미납분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19 · 20조 ((피)선거권)

-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3. 선거가 있는 해의 명부확정일 전날 18시까지 맹비 누적 미납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2020년 3월부터 선거가 있는 해의 9월분까지의 맹비를 대상으로 함). 단, 회계규정 15조의4(납부유예와 분할납부) ①항의 사유로 가맹조직의 규약 · 규정에 따라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규정 15조의4 ②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손배가압류 · 대량해고 등으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가입 후 단 한 번도 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위조직 혹은 조합원. 단, 3호의 예외 사항을 준용한다. (피선거권 제한 : 가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조합원)
- 5. (신설) 재적 조합원수 대비 축소납부한 가맹조직이나 단위조직의 경우 명부확정일 전 6개월분 평균납부인원 만큼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3호의 예외 사항을 준용한다. (피선거권엔 적용 안함)
- 6. (신설) 위 5호에 의한 선거인단 구성의 책임은 해당 조직에게 있으며, 선거인단의 명부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직 전체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피선거권엔 적용 안함)

| 규약 및 규정의 요약해석 |

- 76차 임시대의원대회(2023.4.26.)에서 개정된 규약에 의거, 민주노총 맹비 미납 3개월분 초과 시 해당 산별노조(연맹), 단위조직, 조합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이 가능합니다.
- 70차 정기대의원대회(2020.2.17.) 만장일치 의결사항인, 산별노조(연맹)의 단위조직 별 맹비 납부현황 보고 의무화와 2023년 2차 중앙위원회(2023.8.22.)에서 개정된 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맹비 미납 산별노조(연맹) 또는 산별노조(연맹)의 각기 일부를 이루는 해당 단위조직 및 소속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 9월 30일 18시 기준, 2023년 9월분까지의 맹비 중 4개월분 이상 미납한(즉 6월분까지 완납하지 못한) 단위조직은 민주노총 직선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4월 신규조합원은 3개월, 5월 신규조합원은 2개월, 6월 이후 신규조합원은 1개월 이상의 맹비를 내면 됩니다.)
- 단, 미납 조직 중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이거나 손배가압류, 대량해고 등으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의 결정을 받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권리제한을 유보합니다. 또한 미납분에 대해 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단위조직 역시 권리제한을 유보합니다.

○ 선거권 부여의 기본원칙

▶ 맹비를 정상납부한 단위조직은 맹비 납부 인원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정상납부라 함은, 매월 단위조직의 조합원수에 비례한 맹비가 납부되는 것을 뜻합니다.
- 2020년 3월분부터 2023년 9월분까지 맹비를 3개월분 초과 미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단위조직은 9월 말 (9/30 18시) 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달 분에 납부된 맹비 납부인원으로 선거권 부여 인원수를 산정합니다. (최소한 6월분까지는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되며, 4월 이후 신규가입 단위조직은 해당 가입월 분의 맹비부터 산정)
- 단, 위 인원수가 선거인명부 등록(9/22 등록시한) 선거인 수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가 미미하다면 명부 등록 선거인 수대로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이 때 그 차이가 일용직, 초단시간근무자, 휴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차이로 불만한 것인지 여부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의결합니다.

▶ 산별노조(연맹)의 납부유예의 결정과 관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장기파업·정리해고·계약해지·직장폐쇄 등의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 결정을 인정합니다.
- 손해배상·가압류, 대량해고, 무노무임 등의 사유로 가맹조직에서 납부유예 등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권리제한을 유보합니다.
- 납부유예가 결정된 단위조직은 결정단위에서의 납부유예의 근거를 9/30 18시까지 공문으로 민주노총에 알려야 합니다.

▶ 위 원칙 외 단위조직에 대해

- 선거인명부 등록(9/22 등록시한) 선거인 수와 마지막 (9/30 18시 기준) 으로 납부한 맹비 납부인원 수 차이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나는 단위조직이 9월 말 현재 선거권 제한대상이 됩니다.

○ 선거권 제한 대상 조직이 해야 할 일

▶ 10.17(화)까지 아래 조치를 취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산별노조(연맹)가 해당 단위조직의 의무금(또는 조합비) 납부유예 의결을 추가로 한 경우 그 의결사항 보고를 공문으로 통지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신규조합원 발생으로 인한 맴비납부-명부등록 차이인 경우, 해당 인원수만큼의 맴비 1개월 분을 산별노조(연맹)을 통해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7월 이후 신규가입 단위조직인 경우 명부등록 선거인 수의 맴비 1개월 분을 산별노조(연맹)을 통하여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맴비납부-명부등록 차이인 경우(축소납부), 최근 6개월분 맴비 납부 월 평균 인원수와 명부등록 선거인 수 사이의 차이(인원수)의 6개월치를 산별노조(연맹)을 통해 납부해야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4월 신규 단위조직은 3개월 분, 5월 신규 단위조직은 2개월 분, 6월 신규 단위조직은 1개월 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 축소납부 조직이 미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평균 납부인원 수 만큼 선거권이 부여되며, 부여된 인원수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체 미납분 또는 축소 미납분에 대해 분납개시 시점과 분납기간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최종 조치

▶ 10.19(목)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손배가압류 · 대량해고 등으로 가맹조직에서 납부유예 등 결정을 받은 단위조직에 대해 10/19(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 위 선거권 부여 조치가 되지 않은 단위조직은 10/19(목) 정기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인을 거쳐 선거권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됩니다. 단, 명부확정일 전날 (10/24) 18시까지 선거권 부여 조치가 이뤄지면 선거권 제한을 유보합니다.
- 축소납부조직이 10/24 18시까지 미납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동시선거

산별노조 (연맹)의 동시선거

- 산별노조(연맹) 임원, 소속 지역·업종본부(지부) 임원 등의 직선을 민주노총 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 8월 말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신청하고, 협의를 거쳐 9월 22일까지 동시선거가 확정된 산별노조(연맹)는 민주노총의 2023직선 시스템 전반을 함께 이용해 동시선거를 진행합니다.
- 동시선거를 하는 산별노조(연맹) 조합원은 하나의 똑같은 선거인명부로, 민주노총 직선 현장 투표함 하나로 일원화하여,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연맹) 선거를 진행합니다. (현장투표 · 전자투표 모두 적용)
- 사전 협의에 따라 투표함·투표방법·투표기간 이원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산별노조(연맹) 선거 현장투표 투표용지 등의 제작 비용은 해당 산별노조(연맹)가 부담합니다.

민주노총 지역지부의 동시선거

-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기본부 안산지부, 전남본부 여수지부, 순천지부, 광양지부, 목포신안지부, 경북본부 경주지부, 포항지부> 등 7곳도 지부장 선출 등의 직선을 민주노총 선거와 함께 진행합니다.
- 8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경기본부 · 전남본부 · 경북본부)를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동시선거를 신청하고 협의를 거쳐 9월 22일까지 동시선거가 확정된 지역지부는 민주노총의 2023직선 시스템 전반을 함께 이용해 동시선거를 진행합니다.
- 동시선거를 하는 해당 지역지부 조합원은 하나의 똑같은 선거인명부로, 민주노총 직선 현장 투표함 하나로 일원화하여,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민주노총지역지부 선거를 일괄 진행합니다. (현장투표 · 전자투표 모두 가능)
* 단, 지역지부 선거 현장투표 투표용지 제작비용은 해당 지역지부가 부담합니다.

단위조직 (단위노조)의 동시선거 _ 전자투표에 한함

- 단위조직(단위노조) 위원장(지회장 · 지부장) 선출 등의 직선을 민주노총 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 8월 말까지 소속 산별노조(연맹)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동시선거를 신청하고 협의를 거쳐 9월 22일까지 동시선거가 확정된 단위조직(단위노조)은 민주노총의 2023 직선 시스템 전반 중 전자투표 시스템을 함께 이용해 동시선거를 진행합니다.
- 동시선거를 하는 해당 단위조직(단위노조) 조합원은 똑같은 선거인명부 하나로 일원화하여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단위조직(단위노조) 선거를 전자투표로 일괄 진행합니다.
* 단위조직의 동시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전자투표 비용은 민주노총이 부담합니다.

2023



전체 선거일정 개요와 근거 선거관리규정

날짜	내용	근거 선거관리규정
2023선거일 의결 _ 2023.08.22. 중앙위원회		규정22조
8.28(월)	선거인명부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등록 시작	규정7조 · 규정23조 · 51조의2
	1차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시작	규정23조의2
9.15(금)	1차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마감	규정23조의2
9.22(금)	선거일정 공고	규정22조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	규정23조
9.23(토)	120만 조합원 메시지발송(10/5까지 5회)과 명부수정 시작	규정24조 · 24조의2
	2차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시작	규정23조의2
10.5(목)	명부수정 마감(산별노조(연맹) 주관)	규정24조의2
	2차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마감	규정23조의2
10.6(금)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 재심신청과 명부정정 시작	규정25조 · 26조 · 27조
10.16(월)	명부정정(산별노조(연맹) 주관) 마감	규정27조
10.17(화)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와 명부(최종)정정 시작	규정28조
10.19(목)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미제출 시 조치 개시	규정51조의2 · 62조
10.25(수)	명부(최종)정정(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주관) 마감	규정28조
	투표구선관위원(투표구 · 투표소 선관위원 · 투표사무원) 명단제출 마감	규정51조의2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미제출 시 조치 마감	규정51조의2 · 62조
	선거인명부 확정	규정29조

날짜	내용	근거 선거관리규정
10.26(목)	후보자등록 완료와 후보자 확정공고	규정31조 · 32조
10.30(월)	후보자 선거공보물 파일제출 마감	규정43조
11.1(수)	근무지 장소가 바뀐 현장투표 조합원 조치 시작	규정62조의2 · 65조의2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전자투표 조합원 조치 시작	규정65조의2
	현장투표 투표구(소)의 투표 일시장소 취합 · 보고 시작	규정52조 · 60조
11.7(화)	근무지 장소가 바뀐 현장투표 조합원 조치 마감	규정62조의2 · 65조의2
	현장투표 투표구(소)의 투표 일시장소 취합 · 보고 마감	규정52조 · 60조
11.8(수)	현장투표 투표구(소)의 투표 일시장소 미보고 시 조치 개시	규정52조 · 60조 · 62조
11.12(일)	투표함 · 투표용지의 중앙→지역배부 완료	규정56조
11.13(월)	현장투표 투표구(소)의 투표 일시장소 미보고 시 조치 마감	규정52조 · 60조 · 62조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전자투표 조합원 조치 마감	규정65조의2
	현장투표 개표소장소 · 개표사무원성명 공고 (지역본부선관위 주관)	규정74조 · 75조
11.14(화)	선거인명부 출력과 지역→현장배부 시작	규정29조
	투표함 · 투표용지의 지역→현장배부 시작	규정56조
11.20(월)	선거인명부 출력과 지역→현장배부 마감	규정29조
	투표함 · 투표용지의 지역→현장배부 마감	규정56조

선거일 _ 11.21(화) ~ 11.27(월)

당선자공고 / 연장투표 · 일부재투표 · 결선투표 공고 _ 11.27(월) ~ 11.28(화) 중

(최대5일내)

(최대15일내)

(최대30일내) _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 결선투표 진행 시 예정 투표일 : 12.10(일) ~ 12.14(목)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선거일전(前)

날짜별 선거사무



8.28(월) ~
9.14(목)

-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8.28~9.15)
- 선거관리시스템에 선거인명부 등록 (8.28~9.22)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01 선거인명부 등록과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제출 안내공고(8.28)

민주노총

공고문 서식1호를 8/28(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하고 산별노조(연맹)에 파일 배포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본 공고문을 여러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합니다.

산별노조(연맹)

공고문 파일을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각 단위조직

게시판 출력 부착, 소식지를 통한 공지, SNS·문자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공고문에 아래 사항을 안내합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가맹조직 및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동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민주노총 임원 직접선거 (상급단체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지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우편주소, 성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2023년 8월 28일 ~ 선거 종료 후 15일 이내
2.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모바일, ARS 및 이메일 투표 처리 기관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모바일, ARS 및 이메일 투표 처리 업무
 - 위탁기간 : 투표업무 처리 기간
3.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02 단위조직-투표구-투표소의 구분

단위조직

산별노조(연맹) 소속 기초조직 단위(노조, 지부, 지회, 위원회, 분회 등의 명칭)를 말합니다. 연맹 산하 소산별노조(업종노조)의 경우에도 자체 규약·규정 상 기초조직 단위를 단위조직으로 봅니다.

(예시) 사천지역지회 GA산업분회, 사천지역지회 한국항공서비스분회 등 사업장 분회 각각을 단위조직으로 함

(예시)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연구원지부, 전국공공연구노조 광주테크노파크지부 등 사업장 지부 각각을 단위조직으로 함

(예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전국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서울본부, …… 등 두 곳 이상 지역 체계를 갖춘 조직의 경우 각 지역조직을 단위조직으로 함

(예시)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강원지회,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경남지회,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인천지회, …… 등 두 곳 이상 지역 체계를 갖춘 조직의 경우 각각의 지역조직을 단위조직으로 함

투표구

일반적으로 단위조직과 투표구는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나눈 단위조직이 2개 이상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관할로 조합원이 구성된 경우 지역별로 각각의 투표구로 나눕니다.

(예시) 경기지부◇◇기업지회(경기), 경기지부◇◇기업지회(대전) = 각각 투표구

(예시) ◇◇대학지부(충북), ◇◇대학지부(경기) = 각각 투표구

투표소

하나의 단위조직(또는 투표구) 내에서 현장투표함 설치 장소가 다를 경우(부서, 지점, ○층, □식당 등) 각각을 투표소로 나눕니다. 또한 하나의 단위조직(또는 투표구) 내에서 투표방법을 달리하는 선거인마다(현장투표자, ARS투표자, 모바일투표자, 이메일투표자, 우편투표자) 각각을 투표소로 나눕니다. 모든 조합원이 모바일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투표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기업노조 경남지부의 모바일투표자 = 1투표소 / ◇◇기업노조 경남지부의 ARS투표자 = 2투표소

◇◇기업노조 경남지부의 이메일투표자 = 3투표소 / ◇◇기업노조 경남지부의 현장투표자 = 4투표소

◇◇기업노조 경남지부의 우편투표자 = 5투표소

현장투표 채택 시 주의사항

- 단위조직 인원이 10인 이하인데 현장투표를 채택하려면 다른 단위조직과 통합해야 합니다.
- 투표구 인원이 10인 이하인데 현장투표를 채택하려면 다른 투표구와 통합해야 합니다.
- 투표소 인원이 10인 이하인데 현장투표를 채택하려면 다른 투표소와 통합해야 합니다.

03 단위조직-투표구의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8.28~9.15)

산별노조(연맹)와 각 단위조직

아래와 같이 소속 지역본부를 정하거나 조정합니다.

지역본부

조정과정 때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의견제출 및 사실 확인에 협조하고 최종 조정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원칙

- 조합원 소속 지역본부는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 기준 아래 16개 광역시·도 구분이 원칙입니다.
-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충남/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북

예외 시 조정

-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을 정하는 것이 그간의 활동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 및 이후 지역본부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주체

- 단위조직 → 산별노조(연맹)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기간

- 8월 28일(월) ~ 9월 15일(금) 18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접수 완료 분까지에 한합니다.

신청 서식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_서식5~6호를 사용합니다.

접수 및 처리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접수된 건의 심사를 위해 해당되는 지역본부에 관련 정보를 문의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심사·결정 → 산별노조(연맹)에 결과통보 → 지역본부에 결과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례 예시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대전본부 ≠ 협동조합노조 대전충남세종지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인천본부 ≠ 건설노조 경인지부
- 사무, 병원, 대학, 법원 등 : 본사-지점, 본원-분원, 본교-캠퍼스, 법원-등기소

04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관리시스템에 명부 등록 (8.28~9.22)

각 단위조직

단위조직이 조합원 명부를 아래_서식2호와 같이 취합·종합하여 엑셀(Excel)파일로 작성해 산별노조(연맹)에 제출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_ 모바일·ARS·현장투표

* 아래와 같이 엑셀(Excel)로 작성 후 산별노조(연맹)에 제출

① 지역	② 지역 지부	③ 산별 연맹	④ 가명 _1	⑤ 단위 조직	⑥ 투표구	⑦ 투표소	⑧ 투표 방법	⑨ 명부출력 순서	⑩ 성명	⑪ 동명이인 구분	⑫ 휴대 전화번호	⑬ 여성	⑭ 비고

(1) 지역 : 아래와 같이 조합원 관할 지역본부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강원	11	경기	12	경남	13	경북	14	광주	15	대구	16	대전	17	부산	18
서울	19	세종충남	20	울산	21	인천	22	전남	23	전북	24	제주	25	충북	26

(2) 지역지부 : 아래와 같이 조합원 관할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하 지역지부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7개 지역지부(경기본부 안산지부, 전남본부 여수지부, 전남본부 순천지부, 전남본부 광양지부, 전남본부 목포신안지부, 경북본부 경주지부, 경북본부 포항지부)의 선거인은 반드시 소속 지역지부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강원	강원 춘천지역지부	11	강원 강릉지역지부	12	강원 동해삼척지부	13							
	강원 속초지역지부	14	강원 원주지역지부	15	강원 태백지역지부	16							
경기	경기 안산지부	21	경기 평택안성지부	22	경기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23							
	경기 부천시흥김포지부	24	경기 중부지부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25	경기 성남하남광주지부	26							
	경기 이천여주양평지부	27	경기 북부지부 (의정부양주동두천천포천가평구리남양주)	28	경기 고양파주지부	29							
경남	경남 진주지부	31	경남 거제지부	32	경남 양산지부	33							
	경남 김해지부	34											
경북	경북 포항지부	41	경북 구미지부	42	경북 경주지부	43							
	경북 북부지부	44	경북 경산지부	45									
서울	서울 동부지역지부 (동대문중랑광진성동)	51	서울 서부지역지부 (서대문마포은평영등포강서양천)	52	서울 남부지역지부 (구로금천관악동작)	53							
	서울 북부지역지부 (노원도봉강북성북)	54	서울 중부지역지부 (종로중구용산)	55	서울 남동지역지부 (강남서초강동송파)	56							
세종충남	세종충남 세종지부	61											
전남	전남 순천시지부	71	전남 여수시지부	72	전남 광양시지부	73							
	전남 목포신안지부	74	전남 나주시지부	75	전남 영암군지부	76							
	전남 화순군지부	77	전남 해남군지부	78									
전북	전북 군산시지부	81	전북 익산시지부	82	전북 정읍시지부	83							
충북	충북 충주음성지부	91	충북 제천단양지부	92									
지부 없음	대구 / 대전 / 부산 / 광주 / 울산 / 인천 / 제주												99

※ 지역지부가 없거나 소속 지역지부를 모르는 경우 '99' 를 입력합니다.

(3) 산별·연맹 : 아래와 같이 조합원 소속 산별노조(연맹)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건설산업연맹	11	공공운수노조	12	공무원노조	13	교수노조	14
금속노조	15	대학노조	16	민주여성노조	17	민주일반연맹	18
보건의료노조	19	비정규교수노조	20	사무금융노조	21	서비스연맹	22
언론노조	23	전교조	24	정보경제연맹	25	화섬식품노조	26
강원본부직가입	31	경기본부직가입	32	경남본부직가입	33	경북본부직가입	34
광주본부직가입	35	대구본부직가입	36	대전본부직가입	37	부산본부직가입	38
서울본부직가입	39	세종충남본부직가입	40	울산본부직가입	41	인천본부직가입	42
전남본부직가입	43	전북본부직가입	44	제주본부직가입	45	충북본부직가입	46

(4) 가맹1 : 산별노조(연맹) 별 1단계 조직체계 구분 코드(Code) 세(3) 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 산별노조(연맹) 별 1단계 조직체계 구분 세 자리 코드(Code)는 별도 공문으로 배포합니다. 소속 산별노조(연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공문 시행 이후 조직체계가 변경·추가되는 경우 산별노조(연맹)가 직접 번호를 추가하고 이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주면 됩니다.

가맹조직 1단계 조직체계 코드 번호 예시 (가맹_1 코드) _ 금속노조					
경기지부	101	경남지부	102	경주지부	103
광주전남지부	104	구미지부	105	대구지부	106
대전충북지부	107	부산양신지부	108	서울지부	109

(5) 단위조직 : 산별노조(연맹)에 사전 부여한 단위조직 코드(Code) 네(4) 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 산별노조(연맹) 별 단위조직 네 자리 코드(Code)는 별도 공문으로 배포합니다. 소속 산별노조(연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공문 시행 이후 신규 조직이 생긴 경우 산별노조(연맹)가 직접 번호를 추가하고 이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통지해주면 됩니다.

(6) 투표구 : 단위조직 산하에 2개 이상의 투표구를 나눈 경우 각 투표구 이름을 각기 기재합니다.

- ‘단위조직=투표구’ 인 곳은 동일 표기합니다. 단위조직 내 타 지역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구 분리해야 합니다.

(7) 투표소 : 투표소 이름을 단위조직마다 각기 정하여 기재합니다.

↳ (예시) 제1·제2, 00식당, 3층·4층, 모바일·ARS 식으로 기재합니다.

(8) 투표방법 : 투표방법 별 코드(Code) 두 자리 숫자를 기재합니다.

- 모바일투표(11) ARS투표(12) 현장투표(13)
- ↳ 하나의 투표소에 상이한 투표방법을 가진 이가 섞이면 안 됩니다.
- ※우편·이메일 투표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은 별도의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9) 명부출력순서(연번) : 입력 숫자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표시, 출력합니다.

↳ (취지) 단위조직이 직접 작성한 명부의 조합원 순서와 선거관리시스템의 선거인명부의 조합원 순서를 일치시킵니다. 선거관리시스템에서 각종 선거인명부·명단·목록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때 ‘명부출력순서’ 를 기준으로 표시·출력합니다.

(10) 성명 : 성(姓)과 이름 사이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 김민주A, 김민주B 혹은 이노총1, 이노총2, 이노총3 등
- ↳ ‘전화번호’ 가 없어도 동명이인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기호 등을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법과 무관하게 투표소 내 동명이인이 있다면 성명 항목 혹은 동명이인구분 항목에 반드시 구분기호를 입력합니다.

(11) 동명이인구분 : 동일 투표소 내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A, B 혹은 1, 2, 3 등
- ↳ ‘휴대전화번호’ 가 없어도 동명이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분기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맹조직(단위조직)이 등재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목록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열람용 선거인명부, 발송오류 선거인 명단,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전자투표 미투표자 목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는 ‘휴대전화번호’ 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표방법과 무관하게 투표소 내 동명이인이 있다면 동명이인구분 혹은 성명 항목에 반드시 구분기호를 입력합니다.

(12) 휴대전화번호 : 010-1234-5678 방식으로 중간에 하이픈(-)을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23조(선거인명부등재)에 의거해 의무사항입니다. 전자투표가 아닌 **현장투표**를 채택하는 곳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미기재 시 그 자체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만일 해당 투표구(소)의 선관위원이 등록되지 않거나 현장투표 일시장소가 보고되지 않는 등 현장투표가 정상적으로 준비·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자투표로 전환될 때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13) 여성 : 여성 조합원인 경우 “Y” 를 입력합니다. 그 외의 경우 “N” 을 입력합니다.

- ↳ (취지) 16개 산별연맹의 여성 조합원 수를 동시에 취합하고,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 여성 조합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으로 직선 선거인명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3년에 한 번 민주노총 지역본부 조합원 수, 가맹조직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성 조합원의 수도 ‘동시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여성 할당 비율 등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N"으로 처리합니다

(14) 비교 : 다양한 방식으로 가맹조직과 단위조직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 ‘부서’, ‘사번’ 등 가맹조직(단위조직)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취지) ‘비교’ 란은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동명이인 구분 기호’ 는 ‘동명이인 구분란’ 에 기재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_ 우편·이메일 투표							※ 아래와 같이 엑셀(Excel)로 작성 후 산별노조(연맹)에 제출			
(1) 지역	(2) 지역 지부	(3) 산별 연맹	(4) 가맹_1	(5) 단위 조직	(6) 투표구	(7) 투표소	(10) 성명	(13) 여성	(15) 우편물 받을 주소 (또는) 이메일주소	

(1) ~ (14) : 위 내용 참조

(15) 우편물 받을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 대상자만 기재합니다.

산별노조(연맹)

단위조직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산별노조(연맹)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전 별도 부여)하여 명부를 직접 등록합니다.

※명부 등록은 별도 웹(list.kctu.org)에 하는 것으로, 명부의 등록 및 수정 방법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별도 안내 할 것입니다.

선거인명부 등록 _ 모바일 · ARS · 현장투표

- 산별노조(연맹)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하여 명부를 직접 등록합니다.
- 산별노조(연맹) 중앙을 통하지 않고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지부 · 본부 또는 단위조직이 직접 선거관리시스템에 소속 조합원 명부를 등록하고 싶다면, 이는 1차로 산별노조(연맹) 승인 사항이며 그 승인을 거쳐 산별노조(연맹)가 아래_서식3호와 같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신청하면, 해당 단위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별도 추가부여)하여 명부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번	가맹조직	계정발급단위(단위조합명)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1				

선거인명부 제출(등록) _ 우편 · 이메일투표

- 우편 · 이메일투표 명부는 산별노조(연맹)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엑셀(Excel)파일로 제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이메일투표는 해외근무자, 또는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단위조직의 선거인 중 휴대전화 미소지자에 한합니다.
- 우편투표는 구속자, 또는 조합원의 특수한 근무조건(장기 항해 선원 등)으로 선거기간 내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문자 · 전화 · 이메일 송수신도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투표구(투표소)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둘 다 사용하지 않는 선거인에 한합니다.

선거인명부 제출 등록 시 유의사항

현재의 조합원 전체 명단을 그대로 작성제출 · 등록하면 됩니다.

본 선거인명부 등록 이후, △9.23(토)~10.7(토) 수정 △10.8(일)~10.18(수) 정정 △10.19(목)~10.25(수) 누락 규제 △11.1(수)~11.7(화) 근무지 변경 조합원 수정 △ 11.1(수)~11.13(월) 휴대전화번호 변경 조합원 수정 △ 선거일까지 조합원탈퇴 · 징계 등으로 선거권이 없어진 이에 대한 수시 삭제조치 등 선거인명부 수정 · 정정이 계속 이뤄지므로 본 선거인명부 등록 시에는 현재의 조합원 전체 명단을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9월 22일(금) 18시까지 명부 제출 ·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거관리규정 및 규칙 상 명부 등록 완료 시한은 9월 22일(금) 18시까지입니다. 동 규정 및 규칙 상 선거권 부여 기준 맹비 납부 시한은 9월 30일(토) 18시까지입니다. 9월 30일을 기준으로 명부 등록된 조합원수와 맹비 납부 조합원수를 놓고 선거권 부여와 제한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부 등록 완료 시한을 지켜야 이후 선거권 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거권 부여 및 제한은 8/22 중앙위에서 결정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10월 정기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선거관리시스템 사용 담당자 주의사항

-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전 별도 부여)할 수 있는 산별노조(연맹)와 별도 승인받은 그 산하조직 담당자만이 명부의 등록·수정·추가·삭제 가능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원회·선거관리지원팀 및 가맹·산하 실무담당자 등 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스템 접속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각 산별노조(연맹) 및 그 산하조직 담당자에게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각종 권한(명부 등록·수정, 명부 다운로드·출력, 투표방법 일괄 변경 등)이 부여되거나 제한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산별노조(연맹) 및 그 산하조직 담당자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명부의 휴대전화 번호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번호의 암호화 저장)
- 단위조직이 산별노조(연맹)를 통하지 않고 명부등록을 직접 한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거위 뿐 아니라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연맹)도 해당 단위조직 명부의 휴대전화번호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명부 등록을 위해 사용한 엑셀(Excel)파일을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할 경우 민주노총 규약·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당할 수 있습니다.

05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의 선정

투표구선관위원 선정 원칙

- 단위조직=투표구 인 경우 단위조직마다 2인 이상을 선정합니다.
- 단위조직을 2개 이상의 투표구로 나눈 경우도 투표구마다 2인 이상을 선정합니다.
- 단위조직 또는 투표구가 2곳 이상의 투표소로 나뉘질 경우 투표소별 최소 1인을 선정합니다.
- 조합원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 현장투표가 아닌 전자투표인 경우도 위 원칙대로 선정합니다.

투표구선관위원 선정 특례

- 현장투표 장소(투표소) 한 곳에서 여러 투표함을 두고 현장투표를 진행케 하려는 곳은 선거인명부를 배부받을 수 자만큼의 선관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명부를 분할 배부받는 경우도 동일)
- 하나의 단위조직 또는 투표구 내 여러 투표장소를 선정하되 각 투표장소마다 투표일시를 달리하려는 경우는 투표장소마다 각각의 선관위원 선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인 이하 단위조직(투표구)에 한해 1명 이상의 선관위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원 1명은 동일 투표구 내 여러 전자투표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원 1명은 동일 투표구 내 하나의 현장투표소와 여러 전자투표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일노조인 산별노조에 한해, 산별노조 지역 간부가 동일 지역 내 단위조직(투표구)의 선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구선관위원 선정 절차의 의미

- 단위조직·투표구마다 자체 의결을 통하면 됩니다.

06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단위조직이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을 아래_서식4호와 같이 취합·종합하여 엑셀(Excel)파일로 작성하여 산별노조(연맹)에 제출합니다. 산별노조(연맹)는 이를 종합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정해진 방식(선거관리시스템에 등록 등)으로 10/25(수) 18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엑셀(Excel)파일로 작성하여 산별노조(연맹)에 제출

(1) 지역	(2) 지역지부	(3) 산별연맹	(4) 가맹_1	(5) 단위조직	(6) 투표구	(7) 투표소	(8) 선관위원 성명	(9) 휴대전화번호	(10) 투표구 주소

- (1) 지역 : 선거인명부 코드와 동일
- (2) 지역지부 : 선거인명부 코드와 동일
- (3) 산별·연맹 : 선거인명부 코드와 동일
- (4) 가맹_1 : 선거인명부 코드와 동일
- (5) 단위조직 : 선거인명부 코드와 동일
- (6) 투표구 : 선거인명부 기재명과 동일, 단, '단위조직=투표구' 인 경우 동일하게 기재
- (7) 투표소 : 선거인명부 기재명과 동일
- (8) 선관위원 성명 : 선관위원 명단을 기재
- (9) 휴대전화번호 : 선관위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10) 투표구 주소 : 공보물 배송 주소를 기재, 단 '단위조직=투표구' 인 경우 단위조직의 주소를 기재

07 10인 이하 단위조직·투표구(소) 조치 (8.28~10.25)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10인 이하 단위조직·투표구(소)인데도 현장투표 방법으로 명부를 제출·등록한 경우 △ARS투표·모바일투표 투표방법 변경 △휴대폰이 없는 선거인의 현장투표 → 우편투표·이메일투표 투표방법 변경 등이 반영된 명부정정을 10/19부터 산별노조(연맹)에 요청_서식10호할 것입니다.
- 각 산별노조(연맹)는 해당 단위조직·투표구(소)들을 11인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거나 투표방법을 전자투표로 변경하여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명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 산별노조(연맹)가 위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10월 25일(수) 18시 이후에 직접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 통지확인을 통해 투표방법을 일제히 현장투표→모바일투표(모바일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ARS투표도 가능)로 정정합니다. 이때까지 등록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시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9.15(금)~
9.21(목)

-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8.28~9.15)
- 선거관리시스템에 선거인명부 등록 (8.28~9.22)
- 투표구 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9.15~9.22)

산별노조(연맹)와 각 단위조직

-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선거인명부 등록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지역본부

-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마감일

- 9/15(금) 18시까지가 산별노조(연맹)와 그 산하조직의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 마감 시한입니다.

08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 (9.15~9.22)

민주노총

9.23(토)~10.5(목)에 모바일 메시지가 발송된다는 사전 안내문을 9.15(금)에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별노조(연맹)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해당 안내문을 여러 파일로 만들어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산별노조(연맹)

- 이를 단위조직에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 희망하는 발송 횟수 · 발송일 · 발송시간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제출합니다.

단위조직

게시판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 · 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9.22(금)

- 선거관리시스템에 선거인명부 등록 (8.28~9.22)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제출 (8.28~10.25)
-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 (9.15~9.22)
- 선거일정 공고 (9.22)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선거인명부 등록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 - 9/15(금) 날짜 안내 업무 참고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일

- 9/22(금) 18시까지가 산별노조(연맹)와 그 산하조직의 선거인명부 등록 완료 시한입니다.

09 선거일정 공고 (9/22)

민주노총

공고문_서식8호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별노조(연맹)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추가로 벽보형 공고문을 따로 인쇄하여 단위조직(투표구)에 배송합니다.

벽보형 공고문의 단위조직(투표구) 배송 도착 시기는 9/18 ~ 9/22 입니다.

※ 단위조직(투표구)별 벽보형 공고문(포스터) 필요 크기 및 부수와 주소록(인쇄물 받을 주소)는 사전에 산별노조(연맹)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취합해둘 예정입니다.

산별노조(연맹)

공고문 파일을 단위조직(투표구)에 즉시 배포합니다.

단위조직

벽보형 공고문의 게시판 부착, 공고문파일의 게시판 출력 부착, 공고문파일의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공고문파일의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 현장을 고려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여러 크기 형식의 공고문 파일을 만들어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할 예정이니 해당 단위조직은 이를 출력하여 부착해도 됩니다.

지역본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공고문에 민주노총 중앙임원과 지역본부임원 동시 선거를 적시하고 모든 선거일정(후보등록마감 일시 등)을 통일할 예정이니 지역본부는 따로 선거 일정 공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공고 시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되는 서식

- 민주노총 중앙임원 · 지역본부임원 후보자 추천장과 후보자등록신청서 서식

9.23(토) ~
10.4(수)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9.23~10.5)
- 선거관리시스템 등록명부 수정 (9.23~10.5)
- 관할 지역본부 추가 조정 신청 (9.23~10.5)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10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9.23~10.5)

개요

- 산별노조(연맹)가 등록완료 한 선거인 휴대전화번호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모바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모바일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이 모바일 메시지의 URL로 접속하면 '0000연맹 0000노조 000 조합원은 현재 민주노총 선거인이며 00투표소의 현장투표 대상입니다. 단, 최종 선거인 확정은 10월 25일입니다.(예시)'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조합원마다 안내 URL이 다르게 부여되므로, 본인 이외에는 확인 불가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모바일 메시지는 9월 23일 ~ 10월 5일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간 2~5회 발송되며 다음 회 차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위 본인확인을 완료한 이는 제외되고 발송됩니다.
- 발송일 및 발송 시간은 산별노조(연맹)의 사전 신청을 받아 중앙선관위가 정합니다.
- 모바일 메시지 속 URL을 통한 본인등재확인 은 누락자최종구제신청일까지 가능합니다.

취지

-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메시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이 속한 단위조직, 본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불일치한 조합원이 속한 단위조직, 휴대전화번호 자체가 오류거나 결번인 조합원이 속한 단위조직 등을 확인하여 그 단위조직의 기 등록된 명부부터 우선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 선거일정 개시(앞날에 선거일정 공고 시행)를 전 조직에 실질적으로 알리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11 선거관리시스템 등록 명부 수정 (9.23~10.5)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산별노조(연맹)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명부를 직접 수정합니다. 각 산별노조(연맹) 승인을 거쳐 산하 지역지부·지역본부와 기업노조·기업지부·기업본부가 직접 명부를 등록했던 경우는 해당조직이 직접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명부를 수정합니다. 해당 명부수정은 10.5(목) 18시까지 완료시한입니다.

민주노총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모바일 메시지 발신 오류가 나온 이의 지역-투표구-투표소를 해당 산별노조(연맹)와 직접 명부를 등록했던 노조·지부·본부의 각 담당자에게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정 권한을 이 기간 09:00 ~ 18:00 동안에 한해 해당 단위에 개방합니다.

12 단위조직-투표구의 관할 지역본부 추가 조정 신청 (9.23~10.5)

민주노총

9월 22일까지 등록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토대로 전체 단위조직-투표구-투표소 목록을 산별노조(연맹)과 지역본부에 통지합니다.

산별노조(연맹)와 각 단위조직

통지받은 단위조직-투표구-투표소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조정을 신청합니다.

지역본부

통지받은 단위조직-투표구-투표소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 조정을 신청합니다.

원칙

- 조합원 소속 지역본부는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 기준 아래 16개 광역시·도 구분이 원칙입니다.
- ↳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충남/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충북

예외 시 조정

-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을 정하는 것이 그간의 활동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 및 이후 지역본부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주체

- 산별노조(연맹) / 지역본부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추가 신청 기간

- 9월 23일(토) ~ 10월 5일(목) 18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 완료 분까지에 한합니다.

신청 서식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_서식5~6호를 사용합니다.

접수 및 처리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건의 심사를 위해 해당하는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에 관련 정보와 의견을 문의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결정→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8일(수) 까지 모든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10.5(목)

- 투표구 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9.23~10.5)
- 선거관리시스템 등록명부 수정 (9.23~10.5)
- 관할 지역본부 추가 조정 신청 (9.23~10.5)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사전 안내 (10.5)

민주노총

-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 9/23(토) 날짜 안내 업무 참고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 8/28(목)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120만 조합원 전체 모바일 메시지 발송
- 9/23(토)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선거관리시스템 등록명부 수정
- 9/23(토)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관할 지역본부 추가 조정 신청
- 9/23(토) 날짜 안내 업무 참고

지역본부

- 관할 지역본부 추가 조정 신청
- 9/23(토) 날짜 안내 업무 참고

선거관리시스템 등록명부 수정 마감일

- 10/5(목) 18시까지가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의 선거관리시스템 등록명부 수정 완료 시한입니다.

1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사전 안내 (10.5)

민주노총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이의 신청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고문_서식11호을 10/5(목)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별노조(연맹)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고문을 여러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산별노조(연맹)

이를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단위조직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단, 단위조직별로 아래 사항을 사전에 기재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공고문 내용

민주노총 선거인명부를 아래와 같이 열람합니다.

1. 열람 기간 : 2023년 10월 6일(금) ~ 10월 10일(화)
 2. 열람 시간 : 매일 오전 시 ~ 오후 시 → **단위조직마다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3. 열람 방법 : 방문열람, 전화·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 전산망에 의한 방법
 4. 열람 장소 : → **단위조직마다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5.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명부열람 기간
 - 2) 신청인 : 명부에 누락된 조합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 3) 신청사유 : 누락,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록
 - 4)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5) 접수처 : → **단위조직마다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

10.6(금) ~
10.16(월)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 선거인명부 열람과 선거관리시스템 등록명부 정정 (10.8~10.16)
- 두 곳 이상 복수가입 조합원 정리 (10.8~10.16)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 8/28(목) 날짜 안내 업무 참고

14 선거인명부 열람 (10.6~10.10)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명부 등재 계정(아이디)에 대해 선거관리시스템을 개방하고 선거인명부 조회 및 열람용 명부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합니다. (09:00 ~ 18:00)

산별노조(연맹)

선거관리시스템에서 '1단계 조직 구분 코드'별로 열람용 선거인명부를 엑셀(Excel) 또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 산하 단위조직에 즉시 파일로 배부합니다. 이때 파일을 단위조직별로 나눠서 배부하면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파일을 나눠 배부할지에 대해서는 산별노조(연맹)가 정합니다.

지역	지역지부	산별연맹	가맹_1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방법	명부출력순서	성명	여성	비고

* 휴대전화번호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조직

산별노조(연맹)로부터 배부받은 선거인명부를 인쇄하여 조합사무실 등에 비치하거나, 선거인명부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하여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선거인명부가 비치된 장소를 방문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전화·이메일·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제대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나면 즉시 명부를 파기·파쇄합니다.
- ※ 이 때 열람되는 선거인명부는 실제 현장투표시에 사용되는 투표인명부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추가조치

단위조직이 선거인명부 등록내역 확인을 조합원에게 안내할 때 필요한 번호(1522-2220)도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위조직 집행부가 이 전화번호를 조합원에게 알리고 조합원이 본인 휴대전화로 대표번호에 전화하면 ARS음성안내를 통해 선거인 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 ※ 단, 명부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를 등재한 이만 확인 가능합니다.

15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정정 (10.06~10.12)

단위조직

조합원, 단위조직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라도 열람되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별노조(연맹)에 이의를 신청_서식12호하면 됩니다(구두로도 가능). 이의신청은 10.10(화) 18시 까지 가시한입니다.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산별노조(연맹)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다시 로그인하여 명부를 직접 정정합니다. 각 산별노조(연맹) 승인 하에 산하 지역지부·지역본부와 기업노조·기업지부·기업본부가 직접 명부를 등록했던 경우는 해당조직이 직접 등록 명부를 정정합니다. 그리고 명부 정정을 위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시스템 개방을 (구두로) 요청합니다. 이 명부 정정은 10/12(목) 18시까지가 완료 시한입니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시스템을 이 기간 09:00 ~ 18:00 동안 해당 단위에 개방합니다.

16 이의신청 기각에 따른 재심신청과 정정 (10.6~10.16)

단위조직

위 이의신청자가 산별노조(연맹) 결정사항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산별노조(연맹)(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는 해당 산별노조(연맹)선관위 의결이 필요하므로 서면으로 신청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관련 서식_서식14~15호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재심신청은 위 이의신청 결과일 포함 3일 내에 해야 합니다.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이의신청 기간인 10.6(금)부터 산별노조(연맹)선관위 의결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대비합니다. 산별노조(연맹)선관위가 재심을 받아들이는 의결을 할 경우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명부를 직접 정정합니다. 단, 각 산별노조(연맹) 산하 지역지부·지역본부와 기업노조·기업지부·기업본부가 직접 명부를 등록했던 경우는 해당조직이 직접 등록 명부를 정정합니다. 그리고 명부 수정을 위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시스템 개방을 (구두로) 요청합니다. **이 명부 정정은 10/16(월) 18시까지가 완료 시한입니다.**

17 두 곳 이상 복수가입 조합원 정리 (10.8~10.16)

선거인명부 등록 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중복번호 확인에 의거해, 2020년 사례대로, 민주노총-해당 당사자조직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단, 이 정리시한을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 개시일 전날(10/16)까지로 예정입니다.

10.17(화) ~
10.21(토)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신청과 명부 정정 (10.17~10.25)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제출 없는 투표구(소)에 대한 조치 (10.19~10.25)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 8/28(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18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 신청 (10/17)

민주노총

공고문_서식16호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별노조(연맹)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단위조직이 선거인명부 등록내역 확인을 조합원에게 안내할 때 필요한 전화번호(1522-2220)도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위조직 집행부가 이 전화번호를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조합원이 본인 휴대전화로 대표번호에 전화하면 ARS음성안내를 통해 선거인 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 단, 이는 명부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를 등재한 이만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체 선거인을 대상으로 등재확인 및 누락자 구제를 안내하는 모바일 메시지를 1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연맹)

이를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본 공고문을 여러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위조직

게시판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SNS 및 문자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본 공고문을 여러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19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 신청과 명부 정정 (10.17~10.25)

단위조직

조합원 또는 단위조직 대표자가 직접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선거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아래_서식17호와 같이 신청합니다(해당 신청서 서식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단, 본 신청은 10/23(월) 18시까지로 한합니다.

* 모바일투표 · ARS투표 · 현장투표 누락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직접 신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지역	지역 지부	산별 연맹	가맹 _1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 방법	명부출력 순서	성명	동명이인 구분	휴대 전화번호	여성	비고

* 우편투표 · 이메일투표 누락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직접 신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⑬	⑮
지역	지역 지부	산별 연맹	가맹 _1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성명	여성	우편물 받을 주소 (또는) 이메일주소

* 모바일투표 · ARS투표 · 현장투표 등록명부 변경 · 수정을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직접 신청

정정 전(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지역	지역 지부	산별 연맹	가맹 _1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 방법	명부출력 순서	성명	동명이인 구분	휴대 전화번호	여성	비고

정정 후(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지역	지역 지부	산별 연맹	가맹 _1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 방법	명부출력 순서	성명	동명이인 구분	휴대 전화번호	여성	비고

* 우편투표 · 이메일투표 등록명부 변경 · 수정을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직접 신청

정정 전(前)			정정 후(後)		
가맹조직	이름	주소 또는 이메일주소	가맹조직	이름	주소 또는 이메일주소

* 우편투표 · 이메일투표의 모바일투표 · ARS투표 · 현장투표로의 변경을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직접 신청

정정 전(前)

가맹조직	이름	주소 또는 이메일주소

정정 후(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지역	지역 지부	산별 연맹	가맹 _1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 방법	명부출력 순서	성명	동명이인 구분	휴대 전화번호	여성	비고

민주노총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누락자 등록 또는 변경·수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명부를 직접 정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산별노조(연맹)에 공문_서식18호으로 통지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명부정정을 10/25(수) 18시까지 완료합니다.

산별노조(연맹)

단위조직이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구제 신청을 할 때 이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받습니다.

20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명단제출 없는 투표구(소)에 대한 조치 (10.19~10.25)

민주노총

현장투표를 채택하는 투표구 또는 투표소가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일인 10/25(수) 18시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규칙에 의거해 현장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8(수) 까지 명단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산별노조(연맹)에 공문_서식19호으로 통지합니다.

아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이 안된 투표구(소)는 **10월 25일(수)** 18시까지 ARS투표·모바일투표로 변경하거나, 또는 현장투표를 관리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정하시어 제출바랍니다.

연번	지역	지역지부	산별연맹	가맹_1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위에 정한 일시까지 위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 통지확인을 통해 투표방법을 일제히 현장투표→모바일투표(모바일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ARS투표도 가능)로 정정합니다. 단, 이때까지 등록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시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아래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수 조치 사항

- ① 산별노조(연맹)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 선거인 전체의 투표방법을 직접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정정합니다. 애초 각 산별노조(연맹) 산하조직이 직접 등록한 경우 해당 조직이 명부를 정정합니다. 이때,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 선거인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경우라면 이 기간 동안 휴대전화번호를 취합하여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②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을 재차 조직하여 그 명단을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에 제출합니다.

※ 위 조치 시한은 10월 25일(수) 18시까지입니다.

민주노총의 추가조치

선거관리시스템을 이 기간 09:00 ~ 18:00 동안 해당 단위에 개방합니다. 산별노조(연맹) 혹은 승인받은 단위조직이 직접 선거인명부의 전화번호나 투표방법을 수정,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22^[일] ~
10.25^[수]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제출 (8.28~10.25)
-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신청과 명부 정정 (10.17~10.25)
-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제출 없는 투표구(소)에 대한 조치 (10.19~10.25)
- 후보자 등록기간 (10.22~10.26)
- 선거인명부 확정 (10/25)

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구제신청과 정정

- 10/23(월) 18시까지가 단위조직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명부 누락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입니다.
- 명부 누락자 최종구제 따른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명부 정정 시한은 10/25(수) 18시까지입니다.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제출 마감일

- 각 단위조직 · 투표구 · 투표소 선관위원 명단 제출 시한은 10/25(수) 18시까지입니다.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미제출 후속조치 마감

- 산별노조(연맹)의 투표구선관위원 명단 없는 현장투표 투표구(소) 보완조치 시한은 10/25(수) 18시까지입니다.

민주노총의 사후 조치사항

- **민주노총의 후속 조치사항①** : 위 조치가 되지 않은 현장투표 투표구 또는 투표소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 통지확인을 통해 투표방법을 일제히 현장투표→모바일투표(모바일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ARS투표도 가능)로 정정합니다. 단, 이 때까지 등록 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시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10/25(수) 까지 취합한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을 지역별로 나눠 지역본부에 배부하면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배부한 해당 지역 투표구선관위원 명단을 토대로 지역본부-투표구 간 소통체계를 곧바로 구축합니다.

21 후보자 등록 (10.22~10.26)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관련 업무를 10/22(일)부터 개시 합니다. (매일 09:00~18:00)
후보자등록 마감 날 19시 후보자들에게 교부할 선거운동 패찰_서식30호을 미리 제작해드립니다.

후보자등록 접수

1. 후보조 단위 후보등록신청서 1통, 후보자 추천 서명부 1통, 후보자서약서 1통_서식23~24호
2. 각 1명마다 노동조합활동경력서 1통_서식24호
3. 각 1명마다 조합원 재직 증명서 1통(조합비 납부 증명 포함)
: 후보자가 소속 산별노조(연맹)·단위조직을 통해 준비
↳ 위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 경우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 선관위가 접수증_서식26호을 후보자에 배부

22 선거인명부 확정 (10/25)

10/25(수) 18시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명부 정정 즉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지역본부의 2023년 동시 직선 선거인명부, 즉 선거인명단은 확정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확정된 명단의 투표방법 및 연락처 변경 △확정된 명단의 현장투표장소 변경·△조합탈퇴 및 징계에 따른 선거인명단 삭제 등에 한한 변경만 가능합니다.

단,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직선과 시기를 같이 하여 지도부 직선을 치르는 산별노조(연맹)의 자체 선거인명부 확정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 산별노조(연맹)가 정하고 있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민주노총 선거인명부 확정일로 하여 선거인명단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의 경우 /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같음)

10.26(목) ~
10.30(월)

- 후보자 등록 마감일 (10/26)
- 후보자확정공고와 합동유세 일정통지 (10/26)
-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파일제출 마감 (10.30)

공보물 검토 및 인쇄

- 10/30(월) 24시까지 후보자들이 제출 완료한 선거공보물 파일에 대한 검토 및 인쇄 업무는 10/31(화)에 합니다.

23 후보자등록 마감(18시) 후속 조치 (10/26)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후보자등록 마감(18시) 이후 19시에 후보자들과 아래와 같이 모임(합동회의)을 개최합니다.

선관위 후보자 합동회의 (10/26(목) 19시)

- **후보자 기호 추천** :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추천합니다.
- **후보자(또는 선거운동본부)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안내**
- **선거운동원 패찰 교부와 안내** : 10/23(월)부터 사전 제작해 둔 선거운동원 패찰을 후보자들에게 교부하고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안내합니다.
※ 후보자들에게 교부할 [선거운동안내서]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서 파일을 인쇄하여 제공합니다.
- **전국 투표구별 주소록 교부** : 산별노조(연맹)로부터 취합한 전국 투표구별 주소록을 후보자들에게 교부합니다. 단,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임원 후보들에게 지역본부가 갖고 있는 세부 주소록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보물 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 선거공보물의 10/30(월) 24시까지의 제출을 안내합니다. 단, 중앙임원 후보 공보물파일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지역본부임원 후보 공보물파일은 지역본부선관위로 제출합니다.
※ 선거공보물 작성 및 제출방법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인홍보물 발행 등을 통한 선거운동 안내 및 지역순회 합동유세 및 합동토론회 일정 공지**
※ 개인홍보물 발행 등을 통한 선거운동 유의사항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합동유세 일정 통지

11/3(금)		11/6(월)		11/7(화)		11/8(수)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11/9(목)		11/10(금)		11/13(월)		11/14(화)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11/15(수)		11/16(목)		11/17(금)		11/20(월)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 위 일정은 중앙-지역본부 간 사전협의로 이날까지 합동유세 식순을 포함해 사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위 일정은 선거일 전까지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권역별 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 / 강원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제주〉

※ 언론사-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합동토론회는 일요일 배치 또는 지역순회 합동유세 일정 중 수도권 일정 날로 배치하며, 이것도 10/25(수)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위 지역순회 합동유세 일정 및 언론사-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합동토론회 일정을 담은 공고문_서식40호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해당 합동유세 일정에 맞춰 아래와 같이 준비 및 집행을 사전 점검합니다.

합동유세 준비 및 집행사항

- **시간·장소 확정** : 10/25(수) 18시까지 합동유세 세부 시간·장소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
- **지역 내 공고** : 권역별 합동유세 일정의 7일 전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중 해당 권역 세부 일시장소만으로 공고문을 따로 만들어 소속 단위조직에 파일을 배포하고 단위조직으로 하여금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합동유세 조직화** : 관할 지역 소속 선거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홍보 및 조직합니다.
- **합동유세 당일**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를 보좌하여 합동연설회장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합니다.

합동유세 진행 중 규정위반 선거운동이 있는지 감시합니다.

↳ 예시) 합동유세 동원 선거운동원 수 위반 : 후보별 40명(전국 10명, 해당 지역 30명)

※ 합동유세 현수막 시안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배부하고 이를 지역본부에서 편집·인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24 후보자확정 공고 (10/26)

민주노총

중앙공고문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6개 지역 공고문을 포함한 17개 공고문 파일을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합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전체 선거인에게 후보 확정 공고 혹은 후보 확정 및 공약 안내 등을 모바일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본 공고문을 여러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산별노조(연맹)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역본부

지역 공고문을 지역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

산별노조(연맹)는 17개 공고문 파일을 해당 단위 조직(투표구)에 즉시 배포합니다.

지역본부는 중앙공고문과 해당 지역 공고문 파일을 해당 지역의 산하 단위조직에 추가 배포합니다.

단위조직

공고문 파일 중 중앙공고문과 해당 지역 공고문을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25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① (10/26~11/13)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차원의 등록 명부 최종 정정(10.25) 즉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조합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조직은 산별노조(연맹)에 서식_서식64호 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위 보고를 받은 산별노조(연맹)는 즉시 서식_서식65호 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위 통지를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즉시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자를 직접 재적에서 제외합니다.

10.31(화)

· 선거공보물 검토 · 인쇄 · 배포 (10.31~11.10)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 10/26(목) 날짜 안내 업무 참고

26 선거공보물 검토 · 인쇄 · 배포

(10/31(화)부터 인쇄 → 11/6(월)까지 지역에 배부 → 11/10(금)까지 현장배포 완료)

지역본부

- 지역본부 임원 후보 선거공보물 파일 검토 및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파일 전송
- 09시부터 포스터, 정책자료집, 유세동영상, 정보통신매체용 홍보물 등 각 후보자가 파일로 제출한 사항의 형식과 내용이 선거공보물 작성 안내서에 담긴 것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검토 완료 즉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별도 안내한 곳으로 포스터와 정책자료집 파일을 전송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해당 파일 전송완료를 지역본부선관위 검토 완료로 간주합니다.

민주노총

- 중앙 임원후보 선거공보물 파일 검토 - 09시부터 포스터, 정책자료집, 유세동영상, 정보통신매체용 홍보물 등 각 후보자가 파일로 제출한 사항의 형식과 내용이 선거공보물 작성 안내서에 담긴 것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 포스터 인쇄 - 중앙임원 후보와 지역본부임원 후보가 함께 담긴 포스터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명의로 지역본부별 16종으로 재편집 · 인쇄합니다.
- 정책자료집 인쇄 - 중앙임원 후보와 지역본부 임원 후보가 함께 담긴 정책자료집으로 재편집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명의로 지역본부별 16종으로 인쇄합니다.
- 포스터 · 정책자료집 인쇄물 지역 배부 - 단위조직(투표구)과 산별노조(연맹)지역조직 및 지역본부에 나눠서 발송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보물 게시 - 포스터, 정책자료집의 중앙 1종 및 지역본부별 16종 파일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민주노총과 지역본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와 지역본부 선관위는 각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후보자들이 제출한 각종 공보물 중 유세동영상과 정보통신매체용 홍보물을 정돈하여 게시합니다.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연맹)

• 포스터 · 정책자료집 인쇄물 현장 배부 - 인쇄물이 도착하는 대로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의 배부, 지역본부의 직접 단위조직(투표구)과 소통한 배부 등으로 인쇄물을 신속히 현장에 배부합니다.

단위조직

- 후보 포스터 - 게시판 등 소속 조합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합니다.
- 정책 자료집 - 각종 사무실, 구내식당 등 조합원 왕래가 잦은 곳에 비치합니다.
- 유세 동영상, 정보통신매체용 홍보물 -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에 게시합니다.

민주노총의 추가조치

선거공보 인쇄물의 현장배부 외에도 선거공보물 파일이 게시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소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11.1(수) ~
11.5(일)

- 선거공보물 검토 · 인쇄 · 배포 (10.31~11.10)
- 현장투표소 별 투표 일시장소 취합 (11.1~11.7)
- 현장투표 선거인 중 근무지가 바뀐(펼) 명단 취합 (11.1~11.7)
- 선거인 중 근무지가 해외로 바뀐(펼) 선거인 취합보고 (11.1~11.13)
-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명단 취합 (11.1~11.13)

선거공보물 검토 · 인쇄 · 배포

- 10/31(화)부터 인쇄 → 11/6(월)까지 지역에 배부 → 11/10(금)까지 현장 배포 완료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 10/26(목) 날짜 안내 업무 참고

27 현장투표 투표구(소)의 투표 일시장소 취합보고 (11.1~11.7)

단위조직 · 산별노조(연맹) · 지역본부

각 단위조직은 각 투표구(소)의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아래 서식41호와 같이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을 통해 또는 직접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하고 지역본부가 이를 취합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정해진 방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의 보고 시한은 11/7(화) 18시까지입니다.

연번	투표소 코드	가맹	단위조직	투표구명	투표소명	현장투표 일시		현장투표 장소
						개시일시	종료일시	
						① 월 일 시	① 월 일 시	
						② 월 일 시	② 월 일 시	
						③ 월 일 시	③ 월 일 시	

- ※ 하루 투표라 하더라도 중간에 투표 중단 시간이 있으면 중단 뒤 재개하는 투표를 새로운 일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 ※ 2일 이상의 투표라 하더라도 중간에 투표 중단 시간이 없으면 하나의 투표일시로 기재합니다.

28 현장투표 선거인 중 국내 근무지가 바뀐(궤) 선거인 취합보고 (11.1~11.7)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현장투표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장기교육·장기출장·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실제 투표일에 이 변경이 확실시되는 선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산별노조(연맹)가 단위조직으로부터 아래_서식20호와 같이 취합 받습니다. 그리하여 11/7(화) 18시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종합 보고합니다.**

※ 11/7(화) 18시 이후에는 국내 근무지 변경에 따른 명부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투표구(소) 변경신청

연번	이름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소 코드	지역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소 코드	지역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1											
2											

투표구(소)와 투표방법 모두 변경신청_ 모바일투표 및 ARS투표로 변경할 시

연번	이름	변경 전					변경 후					휴대전화번호
		투표소 코드	지역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소 코드	지역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1												
2												

※ 선거인명부 등록 시 제출한 휴대전화번호가 누락, 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해야 할 경우 해당 항목에 기입합니다. 변경 내용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29 선거인 중 근무지가 해외로 바뀐(궤) 선거인 취합보고 (11.1~11.13)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었거나 실제 투표일에 해외근무가 확실시되는 선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산별노조(연맹)가 단위조직으로부터 아래_서식20호와 같이 취합 받습니다. 그리하여 11/13(월) 18시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종합 보고합니다.**

※ 11/13(월) 18시 이후에는 해외로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명부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투표구(소) 변경신청 _ 이메일 투표로의 전환만 가능

연번	투표소코드	지역	투표구	투표소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1							
2							

30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명단 취합보고 (11.1~11.13)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휴대전화번호 누락 및 변경자가 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산별노조(연맹)가 단위조직으로부터 아래_서식20호와 같이 취합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종합보고합니다. 단,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의 보고 시한은 11/13(월) 18시까지입니다.

연번	투표소코드	지역	투표구	투표소	이름	기존 휴대전화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1							
2							

11.6(월) ~
11.7(화)

- 현장투표소 별 투표 일시장소 취합보고 (11.1~11.7)
- 현장투표 선거인 중 근무지가 바뀐 명단 취합보고 (11.1~11.7)
- 선거인 중 근무지가 해외로 바뀐(필) 선거인 취합보고 (11.1~11.13)
-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명단 취합보고 (11.1~11.13)
- 현장투표 투표용지 · 투표함 제작 돌입 (이 기간 중)
- 투표 참관 제한 현장투표소 승인요청 (11.6~11.12)

현장투표소 별 투표 일시장소 취합보고 마감

- 지역본부가 11/7(화) 18시까지 취합 내용을 종합하여 서식_서식4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

근무지 이동 현장투표 선거인 취합보고 마감

- 산별노조(연맹)가 11/7(화) 18시까지 취합 내용을 종합하여 서식_서식21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 10/26(목)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선거인 중 근무지가 해외로 바뀐(필) 선거인 취합보고 - 11/1(수)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명단 취합보고 - 11/1(수) 날짜 안내 업무 참고

민주노총

- 현장투표 투표용지 제작 - 이 기간 중 중앙임원 선거 투표용지와 16개 지역 임원선거 투표용지 등 17종의 투표용지를 현장투표 선거인수 대비 102% 수량만큼 제작 돌입합니다. 모든 투표용지는 후보자 수와 무관하게 지폐 규격으로 제작합니다. (~11.13까지 지역본부 도착 완료)
- 현장투표 투표함 제작 - 이 기간 중 취합된 현장투표소 별 투표 일시를 감안한 투표함 개수와 투표소의 선거인수를 감안한 투표함 크기 (대·중·소 등 3종) 등 전체 개수의 250% 수량 제작 돌입합니다. (~11.13까지 지역본부 도착 완료)

31 투표참관 제한 현장투표소 승인요청 (11.6~11.12)

개요

- 사업장의 특수한 조건 등의 이유로 정한 현장투표 장소의 참관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관 제한 투표소가 승인되면, 후보자는 그 투표소에 출입 가능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정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승인한 ‘참관 제한 투표소’ 목록을 선거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참관인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조직과 산별노조(연맹)

• 투표참관 제한 현장투표소 승인요청

- 11/21(화)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6(월)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2(수)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7(화)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3(목)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8(수)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4(금)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9(목)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5(토)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10(금)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6(일)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11(토)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7(월)을 현장투표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12(일)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11.8[수] ~
11.13[월]

- 선거인 중 근무지가 해외로 바뀐(필) 선거인 취합보고 (11.1~11.13)
- 선거인 중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명단 취합보고 (11.1~11.13)
- 투표참관 제한 현장투표소 승인요청 (11.6~11.12)
-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보고하지 못한 곳에 대한 조치 (11.8~11.13)
- 현장투표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중앙→지역 배송 (11.13까지 지역배송 완료)
- 현장투표 개표사무원 조직화 및 공고 (11.13까지 지역별 공고 완료)

근무가 해외로 바뀐(필) 명단 취합보고 마감

- 산별노조(연맹)가 11/13(월) 18시까지 서식_서식20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보고합니다.

번호변경 선거인 취합보고 마감

- 산별노조(연맹)가 11/13(월) 18시까지 서식_서식20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보고합니다.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① 마감

- 산별노조(연맹)가 11/13(월) 18시까지 서식_서식65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보고합니다.

현장투표 일시장소 미보고 조치

- **산별노조(연맹)가 완료해야 할 조치사항** :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 선거인 전체 투표방법을 직접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정정 또는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의 현장 투표 일시장소 추가 보고 둘 중 하나를 11/13(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의 사전 조치사항** : 선거관리시스템을 이 기간 09:00 ~ 18:00 동안 해당 단위에 개방합니다. 단, 이미 선거인명부 확정 후 이 기간 뒤 본 정정은 이미 확정된 명부 중 투표방법 정정만 가능하므로, 그 외의 정정은 불가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둘 것입니다.
- **민주노총의 후속 조치사항①** : 위 조치가 되지 않은 투표구 또는 투표소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 통지 확인을 통해 투표 방법을 일제히 현장투표→모바일투표(모바일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ARS투표도 가능)로 정정합니다. 단, 이 때까지 등록 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시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 **민주노총의 후속 조치사항②** : 추가로 산별노조(연맹)로부터 보고 접수받은 투표구 또는 투표소의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지역별로 나눠 해당 지역본부에 추가 통지합니다.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 10/26(목)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투표참관 제한 현장투표소 승인요청 - 11/6(월) 날짜 안내 업무 참고
- 11/23(목)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8(수)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4(금)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9(목)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5(토)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10(금)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6(일)을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11(토)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 11/27(월)을 현장투표날로 정한 단위조직 중 투표참관 제한 투표장소가 있는 경우 11/12(일)에 서식_서식52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승인 요청합니다.

지역본부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배부 현장투표 투표함 · 투표용지 수령 -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수령합니다. (11/13까지)
- 현장투표 개표사무원 조직화 - 개표사무원을 조직합니다. (11/13까지)

32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보고하지 못한 곳에 대한 조치 (11.8~11.13)

민주노총

현장투표를 채택하는 투표구 또는 투표소가 지역본부를 통해 11/7(화) 18시까지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보고하지 못한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아래와 같이 산별노조(연맹)에 공문_서식43호으로 통지합니다.

아래 투표구(소) 선거인의 투표방법을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투표구(소)의 현장투표 일시 장소를 11월 13일(월) 18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역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위 해당 투표구(소)의 현장투표 일시 장소를 보고할 경우, 아래 양식으로 보고 바랍니다.

지역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현장투표 일시		현장투표 장소
				개시일시	종료일시	
				① 월 일 시	① 월 일 시	
				② 월 일 시	② 월 일 시	

산별노조(연맹)와 단위조직

아래 조치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수 조치사항

- ① 산별노조(연맹)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 선거인 전체의 투표방법을 직접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정정합니다.
- ② 산별노조(연맹)가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의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재취합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위 조치 시한은 11월 13일(월) 18시까지입니다.

33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이름 공고 (11/13까지)

지역본부와 단위조직

- **지역본부** -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이름을 담은 공고문을 서식_서식66~67호대로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거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단위조직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 **단위조직** - 지역본부가 배포한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문 파일의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SNS 및 문자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11.14(화) ~
11.20(월)

-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출력 (11.14~11.20)
-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및 투표물품 배부 (11.14~11.20)
- 현장투표 투표기간 · 안내문 현장공고 (11.14~11.20)

34 현장투표 선거인명부출력 (11.14~20)

지역본부

- **선거인명부 내려받기** -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사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지역본부마다 달리하여 부여)하여 현장투표 명부 내려받기를 하면 PC에 해당지역의 현장투표 명부가 PDF파일로 저장됩니다.
- **명부파일 개요** - 해당 PDF파일에는 명부가 투표구와 투표소별로 페이지(Page)가 나뉘지며 각 페이지에는 연번-단위조직-투표구-투표소-이름-서명칸이 함께 표기되며, 휴대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명부 출력하기** - 이 PDF파일을 1회 인쇄합니다. 이 때 PDF파일을 별도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기획사 또는 인쇄소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 PDF파일을 전산망 등으로 전송해서는 안 되며, 기획사·인쇄소를 통한 인쇄 뒤 별도 저장매체(USB) 속 PDF파일과 PC 속 PDF파일 모두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지역본부선거위원회 2인의 날인 서식47호 으로 확인합니다.

35 현장투표 선거인명부와 투표물품 배부 (11.14~11.20)

지역본부

- **사전확인**
 - 출력한 선거인명부
 - 투표함 _ 투표소 별 투표 횟수 및 선거인수에 따른 크기 및 수량 확정, 250% 지역본부 배포, 100% 현장투표소 배분, 여분 150%는 지역본부 보관
 - 투표용지 _ 선거인 100% 배분, 여분 2%는 지역본부 보관
 - 봉합스티커 _ 투표함 조립시 스티커와 투표 종료 뒤 봉합시 스티커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별도 사전제작
 - 일일투표록·투표결과보고서 _ 민주노총 중앙선거위 홈페이지에서 서식54, 55호를 내려받아 출력
 - 회송봉투_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별도 사전제작
- **분류작업**
 - 투표구 별로 분류
 - 하나의 투표구에 여러 개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 투표소별로 분류 뒤 투표구(단위조직)별 다시 묶어 분류
 - 잔여 물품은 보관하였다가 부족, 훼손 등 상황 발생할 경우에 목록, 수량 등 기재 후 추가 배부

• 배부작업

- 투표구선관위원들과 사전 소통하여 각 배부방법 · 시간 · 수령인 사전 확인
- 사전에 해당 단위조직(투표구)과 연락을 통해 혼선 방지
- 인수인계 시 물품 확인과 인수인계 대장_서식47호 에 작성 및 확인날인

산별노조(연맹)

소속 지역조직(지역본부 · 지역지부)별로 담당자를 사전에 정하여 관할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원활한 배송을 위한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합니다. 만일 해당 지역에 지역조직이 없을 경우 산별노조(연맹) 중앙에서 담당자 지정 등의 협조를 합니다.

단위조직

• 수령 · 체크

- 투표용지의 수량, 일련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훼손여부 등 체크
- 투표함의 수량, 규격, 훼손여부 등 체크
- 투표함 봉인스티커의 수량, 훼손여부 등 체크
- 선거인명부의 투표구(소)별 발행 확인, 훼손 또는 누락 여부 등 체크
- 일일투표록 · 투표결과보고서 · 회송봉투

• 사전숙지

- 투표용지는 단위조직(투표구) 선거인 수 대비 100% 배포
- 투표소별로 중간 투표중단시간이 있고 다시 재개할 때는 새로운 투표함 사용
- 민주노총 임원선거, 지역본부 임원선거,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와 민주노총지역지부 선거 모두 하나의 투표함 사용
- 선거인명부 이동과정 중 훼손되면 지역본부에 보고 후 재발행 받아야 함

36 현장투표 투표기간 · 안내문 현장공고 (11.14~11.20)

단위조직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게 공고_서식48~49호 합니다. 공고방법은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게시 하는 것입니다.

- 11/21(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4(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2(수)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5(수)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3(목)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6(목)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4(금)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7(금)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5(토)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8(토)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6(일)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9(일)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7(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20(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선거일기간

세부 선거사무_현장투표



각 단위조직의 현장투표 세부안내는 11월 중 별도 투표사무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로 상세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안내서에는 각급 선거 사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개요)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투표일 전(前)

- 현장투표 투표기간과 안내문 현장공고
- 투표물품 수령
-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 현장투표소 설치

01 현장투표 투표기간 · 안내문 현장공고 (11.14~11.20)

단위조직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게 공고_서식48~49호 합니다. 공고방법은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게시하는 것입니다.

- 11/21(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4(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2(수)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5(수)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3(목)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6(목)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4(금)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7(금)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5(토)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8(토)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6(일)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9(일)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7(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20(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02 현장투표 선거인명부와 투표물품 지역본부로부터 수령 (11.14~11.20)

단위조직

- 수령 · 체크
 - 투표용지의 수량, 일련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투표함의 수량, 규격,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투표함 봉인스티커의 수량,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선거인명부의 투표구(소)별 발행 확인, 훼손 또는 누락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일일투표록 · 투표결과보고서 · 회송봉투 등을 체크합니다.
- 사전숙지
 - 투표용지는 단위조직(투표구) 선거인 수 대비 100% 배포합니다.
 - 투표소별로 투표 중간에 투표중단시간이 있고 다시 재개할 때는 새로운 투표함 사용합니다.
 - 민주시민총 임원선거, 지역본부 임원선거,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선거 모두 하나의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 이동과정 중 선거인명부가 훼손되면 지역본부에 보고 후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

03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② (~현장투표날 전(前))

단위조직

조합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는 자가 지역본부로부터 출력 배부된 선거인명부에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단위조직의 조치사항

- ① 출력 배부된 선거인명부의 해당자 란에 줄을 긋고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② 아래_서식64호 대로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연맹) 모두에 서면 보고합니다.

재적 선거인수 변경 전 (명)			재적 선거인수 변경 후 (명)		
연번	투표소 코드	투표소명	이름	사유	비고/동명이인 구분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

위 보고를 취합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서면_서식65호 보고합니다.

선거인명부 누락자가 발견되더라도

- 민주노총 · 민주노총지역본부 2023직선의 선거인명부는 10/25(수)에 확정된 명단에 의거하며 조합 탈퇴 및 징계 등에 따른 명단 삭제 외에는 누구도 임의로 추가기재(임의로 등재) 등의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역본부로부터 출력 배부된 선거인명부에 혹시 빠진 조합원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선거 재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선거인명부에 임의로 누군가를 기재(임의등재)할 경우 해당 투표소가 일부재투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기재(임의등재)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04 투표소 설치 (~현장투표 직전)

▶ 투표소의 시설 및 설비 사전준비 조치

- ① **작업대 설치** : 신분확인 → 선거인명부 서명 → 투표용지 교부 등의 작업대입니다.
- ② **기표소 설치** : 기표소를 설치합니다.
- ③ **투표함 설치** :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 현장투표함 조립설치법은 추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④ **참관인 좌석 배치** : 참관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을 준비합니다.
참관인 대장_서식50호 을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투표 참관인용 패찰_서식51호 을 준비합니다.
- ⑤ **투표안내문_서식48호 게시** : 투표소 입구, 투표소 내부 등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력 게시합니다.

▶ 투표용지, 기타 투표관계서류의 준비

- ① 지역본부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한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교부용 작업대에 배치합니다.
- ② 일일투표록, 투표결과최종보고서, 투표용지 및 관계서류 봉함용 물품, 투표함 봉함용 스티커 등 투표관계서류를 준비합니다.
- ③ 일일투표록의 경우 투표 기간 동안 발생한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합니다.

▶ 기표소와 기표도구 설치

- ① **기표소** : 다른 이가 엿볼 수 없게 설치하고, 기표소 내부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소와 기표도구를 사전에 대여해도 됩니다.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분리·독립 공간을 두고 이를 기표소로 사용해도 됩니다.
- ② **기표용구** : 반드시 동일한 기표도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기표용구만 사용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투표소가 제공·안내한 기표도구 외의 기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예시) '⊗' 표 기구 또는 '○' 표 기구 등 단위조직에서 자체 마련 (필기구로 직접 기재하는 방식의 기표 시 무효)

현장투표 일시가 2회 이상인 경우 사전 점검

- ① 매 회의 현장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1회 1개 투표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장투표 일시가 3회인 경우 3개의 투표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 ② 하루에 투표중단 시간(가령 식사시간 등)이 있는데 교대로 관리할 투표구선관위원이 없을 경우 투표중단과 함께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새로운 투표개시 때 새로운 투표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하루에도 2개 이상의 투표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③ 2일 이상의 투표 기간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투표구선관위원의 교대근무 관리로 투표중단 없는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1회 투표로 간주하여 하나의 투표함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③ 새 투표함 사용 때,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새 투표함에 조립용 테이프를 부착하여 투표함을 설치하고, 기표소 설치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투표를 진행합니다.
- ④ 참관인이 없는 경우는 첫번째로 투표하는 선거인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장투표일 기간

- 현장투표 실시
- 투표상황 기록과 보고 등

05 선거인 신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단위조직

선거인이 투표를 위해 투표소로 들어오면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선거인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게 합니다
투표구선관위원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와 중앙선관위 청인 등 투표용지에 흠결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 절취선에 맞춰 투표용지를 절단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구선관위원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 기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투표용지를 접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투표내용이 공개될 경우 무효가 됨을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공개된 투표용지 처리 및 조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된 투표용지를 회수합니다.
공개된 투표용지를 준비된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그 봉투 앞면에 '공개된 투표용지' 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해당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06 투표상황 기록과 보고

단위조직

투표 진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항을 일일투표록_서식54호에 기재하고, 해당 사항을 목격한 참관인·선거인 등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별노조 (연맹)와 지역본부

-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본부 및 지부)은 당해 현장투표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매일 16시에 투표구마다 확인하여 각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취합하여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본부 및 지부)이 없는 지역본부는 지역본부가 직접 취합합니다.
- 지역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매일 16시에 투표소별 투표자수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종합 보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효율적인 현장투표율 집계를 위해 투표소 선관위원(선거사무원)이 직접 투표자 수를 입력할 수 있는 집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별 일일투표율 16시 보고 · 취합의 취지

- 7일의 선거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체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11/28(화)~12/2(토) 중 해당 선거구 투표를 1일 내지 5일 연장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마지막날인 11월 27일(월) 16시~17시 중 현장투표 투표율(지역본부 보고)과 전자투표 투표율(중앙 집계)을 합산하여 투표율 과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장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연장투표를 의결하여 공고합니다. 단, 이때 투표율을 감안하여 연장투표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앙 집계되는 전자투표가 아닌 현장투표 투표율은 매일 16시에 단위조직→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지역본부→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07 투표참관

단위조직

각 현장투표소마다 후보자별로 1인씩 참관인을 두고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합니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참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참관인 없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1.6~11.12 사이에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승인하고 11/20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관 제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관인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표참관인의 역할

- 입회 시작 및 종료 시 투표참관인 대장_서식50호 에 해당 시점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합니다.
- 패찰_서식51호 을 늘 잘 보이도록 착용합니다.
- 투표 개시 전 투표소 내 확인, 기표대 이상 유무 확인, 투표함 설치, 봉합을 참관합니다.
-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 권유 등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08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봉인

단위조직

당일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루 중 중간에 투표중단 시간이 있는 경우도 해당 투표중단 시점에 현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 종료시각을 앞둔 조치사항

- 투표 종료시각 5분 전, 투표소 입구에 투표구선관위원 혹은 투표사무원을 배치합니다.
- 투표 종료시각 기준으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투표소 입구를 폐쇄합니다.
- 투표 종료시각 이후 도착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까지 투표를 마치면, 당일 또는 해당일시의 투표를 종료합니다.

▶ 투표함 봉인절차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함스티커를 사용하여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 참관인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투표한 선거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 봉함에 참여한 마지막 투표자 또는 참관인은 참관인 대장 서식50호에 서명·날인합니다.
- 단, 투표종료 시각에 참관인도 없고, 마지막으로 투표한 선거인도 없는 경우 투표구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은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하고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 ※ 현장투표함 봉인법은 추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09 현장투표소가 미설치되었을 경우 조치

지역본부와 단위조직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투표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지역본부가 확인하였고 그 확인 시점에 전체 선거일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날(11/20)까지 현장투표용품 수령을 하지 않은 곳도 동일 조치)

조치 사항

- ① 해당 선거인(들)을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정정해 남은 선거기간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단위조직과 시급히 협의합니다.

- ② 위 협의가 완료되면, 서면_서식57호 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현장투표소 미설치에 따른 전자투표로의 투표방법 변경’ 을 요청합니다.
- ③ 위 통지를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즉시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 통지확인을 통해 투표방법을 일제히 현장투표→모바일투표(모바일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ARS투표도 가능)로 정정합니다. 단 이때,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자는 재적에서 제외합니다.
- ④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위 사실을 즉시 산별노조(연맹)에 통지_서식58호 합니다.
- ⑤ 이미 배부된 해당 투표소의 현장투표 선거인명부·투표함·투표용지는 자동 폐기 처리됩니다.

10 현장투표 당일 투표장소 변경 허용 특례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투표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가령, 야외 장소로 예고했으나 날씨 등의 이유로 실내로 옮겨야 하는 경우), 선거관리규정 52조 2항 내지 3항대로, 지역본부선관위에 단위조직이 변경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고, 즉시 선거인에게 변경 장소를 공고하면 됩니다.

현장투표 종료 후

- 일일투표록 및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지역본부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 송부

11 일일투표록 및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단위조직

단위조직이 정한 현장투표 기간이 완전 종료되면, 매일의 일일투표록_서식54호 과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_서식55호 를 작성 완료하여 각각 1부 복사(단위조직 보관용)합니다.

일일투표록과 투표최종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이 모두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12 지역본부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 송부

단위조직

잔여투표용지(훼손된 투표용지 포함)와 일련번호가 적힌 용지(이하 투표용지 일체)를 정리합니다.

투표용지 일체, 선거인명부, 일일투표록과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원본, 투표참관인 대장을 회송봉투에 담습니다.

지역본부가 사전 안내한 곳으로 가서 인계하고 인수인계 대장에 서명날인 합니다.

※ 단위조직이 지역본부에 투표관련서류 및 투표함을 회송할 때 직접 인계하여야 합니다. (퀵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이용 금지)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선거일기간

선거사무개요_전자투표



각 전자투표 시 선거인 인증 방법의 세부사항, 투표 문항 세부사항, 투표완료 절차 세부사항, 서버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분산 등의 세부내용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 의결을 거쳐 별도 안내됩니다. 본 안내서에는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개요)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투표의 경우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에서 일괄 사무를 처리하므로 안내를 생략합니다.

모바일투표



● 투표 방법

민주노총이 보낸 모바일 메시지 속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뒤 기표

● 모바일 메시지 발송 횟수

전체 7일 간 매일 1회 발송원칙 (단, 투표 완료자는 다음 회 차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자동제외)

※ 2G폰이나 인터넷 차단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투표 불가

※ 모바일 메시지 발송 비용은 민주노총이 부담



▶ 대(對) 선거인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

- 전체 7일 동안 1일 1회 08시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산별노조(연맹)의 사전 요청으로 산별노조(연맹)별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필요 시 하루 2~3회 모바일 메시지 발송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투표 전(前) 본인인증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선거인마다 각기 모두 다른 URL(인터넷주소)이 발송됩니다.
- 단, 전체 선거일 7일 동안 보내지는 각 선거인 별 URL(인터넷주소)은 동일합니다.
- 모바일 메시지를 수신받은 선거인이 모바일 메시지 내용 속 URL(인터넷주소)에 접속한 뒤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4자리 숫자 인증번호가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모바일 메시지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본인인증 페이지의 인증번호칸에 입력하면 투표창이 열립니다.



▶ 모바일투표 유효시간

- 매일 24시(자정)부터 새벽 04시 사이에는 투표를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어느 때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위 본인인증이 끝난 뒤에는 30분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30분 내 투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모바일투표 도중 중단하였을 경우

-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를 시작했으나 투표 도중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창을 닫고 나갈 경우,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다시 본인인증을 거치면 기존에 진행중이던 투표에 이어서 재개됩니다.
- 투표 중단 후 투표 종료일까지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투표 중단 전 완료한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되나 완료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 '선택하지 않음' 기표 가능

- 민주노총 임원, 지역본부 임원 등 각 선거 문항에는 '선택하지 않음' 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음' 에 기표하고 투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

ARS투표



● 투표방법

안내 전화를 받아 그 안내에 따라 기표 (안내전화 받지 않을 시 당일 추가 1회 전화)

● 안내전화 발신횟수

전체 7일 간 매일 1회 발송 원칙 (단, 투표 완료자는 다음 회차 안내전화 시 자동 제외)

※ 안내 전화비는 민주노총이 부담



▶ 대(對) 선거인 안내전화 발신 시간

- 전체 7일 동안 1일 1회 09시부터 순차적 안내전화 발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안내전화 미수신 시 당일 중 안내전화가 재발신됩니다.
- 단, 산별노조(연맹)의 사전 요청으로 산별노조(연맹)별 안내전화 발신시간을 매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위 의결로 필요 시 하루 1회 추가 안내전화 발신도 가능합니다.



▶ ARS투표 전(前) 본인인증

- ARS 전화 안내에 따른 숫자 4자리를 누르면 본인인증으로 갈음합니다.
- 그 뒤 음성 안내에 따라 기표행위를 하면 됩니다.



▶ 투표통화 도중 중단되었을 경우

- 투표통화 도중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를 끊었을 경우에는 다음날에 투표해야 합니다.
- 다음 날 미투표자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전화를 수신하게 될 것이며, 이 때 기존에 진행중이던 투표에 이어서 투표가 재개됩니다.



▶ '선택하지 않음' 기표 가능

- 민주노총 임원, 지역본부 임원 등 각 선거 문항에는 '선택하지 않음' 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음' 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

이메일투표



● 대상제한

해외근무자와 전자투표 시행 단위조직(투표구)의 휴대전화 미소지자에 한함

● 투표방법

민주노총이 보낸 이메일(총 3회)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 및 본인인증 후 1시간 내 기표



▶ 대 선거인 이메일 발송횟수

- 전체 7일 동안 3회 이메일을 발송할 것이며, 발송일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정합니다.



▶ 이메일투표의 본인인증

- 각 선거인이 수신한 이메일의 URL(이메일주소)을 클릭하여 투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투표페이지의 [인증메일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즉시 '인증이메일' 이 추가 발송되며, 그 이메일을 30분 내에 열어 [인증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기존 투표페이지를 통해 투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음' 기표 가능

- 민주노총 임원, 지역본부 임원 등 각 선거 문항에는 '선택하지 않음' 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음' 에 기표하고 투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

전자투표 공통사항

- 전자투표 일일투표율 공개 등
-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01 전자투표 일일투표율 공개 등

민주노총

- ①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는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전자투표 일일 투표율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전체 또는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별로 외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 (연맹), 지역본부, 민주노총

- ②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는 어느 조직이든 서면_서식61호 으로 전체 투표소, 혹은 특정 투표소에 대한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목록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에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요청을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는 의결을 거쳐 요청한 조직(산별노조(연맹) 또는 지역본부)에 해당 명단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 명단목록 제공 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들에게도 동시에 제공됩니다.

02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③

단위조직, 산별노조 (연맹), 민주노총

- 선거인명부 확정(10.25) 이후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조합원이 선거일 기간에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조직은 산별노조(연맹)에 서식_서식64호 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 위 보고를 받은 산별노조(연맹)는 즉시 서식_서식65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 위 통지를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는 즉시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자를 직접 재적에서 제외합니다.

현장·전자 합계 투표율

- 현장투표 · 전자투표 합계 투표율 공개 등



01 현장투표·전자투표 합계 투표율 공개 등

민주노총

- ①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의결을 통해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현장투표 · 전자투표 합계 투표율을 전체 또는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별로 외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 ②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의결을 통해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현장투표 · 전자투표 합계 투표율을 산별노조의 지역별, 지역본부 내 가맹조직별, 전체 단위조직(투표구) 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투표율 집계시스템을 산별노조(연맹) 및 지역본부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 (연맹), 지역본부

- ③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율 집계시스템이 개방되면 사전에 부여받은 투표율 조회용 계정을 이용하여 집계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지역별, 지역본부 내 가맹조직별, 전체 단위조직(투표구) 별로 투표율을 조회하고 투표율이 저조한 단위조직(투표구)를 확인하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연장투표

선거사무



연장투표 개요

- 전체 7일의 선거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체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또는 특정 지역의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11/28(화) ~ 12/2(토) 18:00까지 해당선거구 투표를 5일 연장하게 합니다.
- 전국 전체 투표율이 과반이 넘었는데 특정 지역 투표율만 과반에 미달할 경우의 연장투표 공고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연장투표 공고는 11월 27일(월) 16시~17시 중 의결하여 17시에 공고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시 당시 투표율을 감안하여, 1일 내지 4일 연장 등으로 연장투표기간을 줄여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01 투표기간 연장 공고

민주노총

공고문_서식62호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1/27(월) 17시 게시하고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연맹)

이를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단위조직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모바일 메시지·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단 전자투표가 아닌 현장투표를 채택한 단위조직의 경우 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에 투표일시장소를 기재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아래 사항이 안내 됩니다

1. 연장투표일 : 2023년 11월 28일(화) 09:00 ~ 12월 2일(토) 18:00
2. 연장투표 선거구 : 아래와 같음
 - 전국 :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 또는
 - ○○지역본부 : ○○지역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사무처장 선거
3. 연장투표 일시 : (전자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연장투표일 동안 매일 진행
(현장투표) 투표구(단위노조)선거관리위원회 별도 공지
4. 연장투표 장소 : (현장투표) 투표구(단위노조)선거관리위원회 별도 공지

02 연장투표 시 조치

민주노총

연장투표기간 매일 전자투표 명부 중 해당선거구의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선거일 기간 세 부 선거사무 _ 전자투표>에서 안내한 전자투표 업무를 합니다.

※ 이 때 이미 과반 투표율로 선거를 마친 선거구에 해당하는 문항은 제외합니다.

지역본부

현장투표를 채택한 단위조직(투표구)과 시급히 소통하여 각 단위조직별 현장투표의 일 시장소를 취합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보관 중인 새 투표함과 기 회수했던 투표관계서류 일체를 새 회송봉투(1종)와 함께 단위조직에 배부합니다.

단위조직

현장투표를 채택하는 단위조직은 단위조직이 정한 현장투표일에 지역본부로부터 추가 배부받은 투표함과 기존의 투표관계서류 일체로 연장 현장투표를 실시합니다. 필요 사무는 <선거일 기간 세 부 선거사무 _ 현장투표>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

※ 단, 이 때 이미 과반 투표율로 선거를 마친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연장투표 선거구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구의 지역본부는 애초 계획대로 <현장투표 개표 사무>로 안내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단,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전자투표 결과와의 합산을 통한 전체 지역의 개표결과는 연장투표 종료 및 개표 뒤에 일괄 공표합니다.

연장 현장투표 일시 수립 불가 통보 단위조직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지한 일정 내에 현장투표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는 단위조직(또는 투표구)은 연장투표의 참정권을 기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현장투표 시 투표율이 0%였던 단위조직(투표구)

- 본 7일 간의 선거일 동안 현장투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여 투표율이 0%인 단위조직(투표구)의 경우, 연장투표 시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 전체 선거인을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본부가 해당 단위조직과 협의하여 서면_서식63호 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요청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해 직접 정정 조치합니다. 단,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현장투표의 개표

선거사무 개요



현장투표 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개표사무원 용 <개표사무안내서>는 별도 발행 배부될 예정입니다. 본 안내서에는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개요)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개표 업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일괄 전자 집계 되므로 안내를 생략합니다.

개표 사전준비

-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
- 개표 운영계획 사전수립
- 개표 물품 준비

01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

지역본부

현장투표 개표장소와 개표사무원이름을 담은 공고문을 서식_서식66~67호대로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 11월 13일(월) 게시하고 이를 단위조직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 **지역본부별 1개 개표소 설치 원칙** : 도서·벽지 등 투표함의 이송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표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표분소 설치 여부는 지역본부선관위가 결정하되,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투표 대비 사전 조치** : 전국 전체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 과반 미달로 전국 또는 특정 지역의 연장투표 실시가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마지막 날인 11/27(월) 17시까지 의결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역본부는 미리 마련해 둔 비상연락망으로 11/27(월) 개표 취소를 공지하고 곧바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고할 연장투표 공고문_서식62호를 단위조직에 파일로 배포하고,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연장투표일 마지막 날로 현장투표 개표일시장소를 정해 지역본부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합니다.

↳ 이를 위해 지역본부는 11/27(월) 16시 현장투표율 점검과 전자투표율을 관리하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와의 긴밀한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단위조직

지역본부가 배포한 현장투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원 이름 공고문 파일의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SNS 및 문자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02 개표 운영계획 사전수립

지역본부	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 등을 통해 충분한 수의 개표사무원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할 업무를 미리 배정하는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합니다.
접수부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의 이상 유무, 누락 등 확인 → 투표함과 투표관리봉투를 세트로 묶어 적재
개함부	투표함을 열고 오·훼손 용지와 정상 투표용지를 각각 분류해 묶음
분류부	정상투표용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용지를 별도 분류
심사부	후보별 분류된 정상투표용지 확인 / 미분류 투표용지 및 훼손용지 유·무효 구분과 후보별 분류
검열집계부	지역본부선관위 주관 하에 분류결과 검열과 집계 / 투표소별 집계 및 개표 상황표 작성
정리부	선거관리시스템에 개표상황표 입력 투표용지 분류 <유효표(후보별), 무효표(전체)> / 모든 선거관계서류 밀봉 후 선관위 서명

03 개표물품 사전준비

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수기 대여 국가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계수기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 개표소 내 공간확보 및 물품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표소 내에 개표 참관인석과 관람인석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개표 시 필요한 물품(필기구, 바구니, 계산기, 복사기, 투표용지를 묶을 고무 밴드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개표소 출입자(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용 패찰_서식69호를 준비합니다. - 개표집계 용 PC · 프린터 준비 : 관할 지역 투표구 규모를 고려하여 여러 대 설치합니다.
-------------	---

개표 업무

- 개표 개시
- 개표 각 단계별 유의사항(개요)
- 개표결과 보고와 당선자 공고

04 개표개시

지역본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개시 공표 이후에 개표소별로 개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표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투표함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전체 투표소의 절반(1/2)에서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표 순서는 투표함의 도착 순서에 따릅니다.

05 개표의 각 단계별 유의사항(개요)

지역본부

각 단계별 세부 개표 절차는 별도 배포하는 <개표사무안내서>를 참고합니다. 아래는 미리 숙지해둬야 하는 몇 가지 필수 유의사항만 안내드립니다.

투표함 봉쇄 · 봉인 흠결 시

- 일일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상황을 확인합니다.
- 투표함 봉쇄 · 봉인에 흠결이 있는 경우, 즉시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확인하고, 투표함 유 · 무효 및 개표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투표함 유 · 무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투표관계서류 이상 시

- 투표관계서류를 가져오지 않거나,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투표함을 별도 장소에 대기시키고 투표사무원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가져오도록 한 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개표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합니다.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꺼내 정리하는 방법

- 접혀 있는 투표용지가 없도록 한 장씩 펼쳐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 투표용지 정리가 끝나면 주변에 누락된 투표용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 끈적끈적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것 등 오·훼손 투표용지는 따로 모아서 묶습니다.

유효표의 기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호란, 후보자 성명란에도 기표한 것
-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은 것이지만 식별할 수 있는 것
- 투표용지 일부가 찢어졌거나, 찢어져 소실됐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후보자 모두의 기표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두 후보자 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 (후보자 란이란 기호란, 성명란, 기표란을 모두 포함함)
- 투표인이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표 하였다가 착오를 발견하고 그 위에 겹쳐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
- 투표인이 지지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는 필기구로 문자를 기재한 경우.

※ 위 예시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

무효표의 기준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테두리선에 맞물려 기표하여 어느 후보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 투표소에서 안내·제공된 투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경우

※ 위 예시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

06 개표결과보고

지역본부

- 모든 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상황표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개표 완료 보고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검토 후 출력이 승인되면 선거관리시스템에서 개표록과 집계록을 출력합니다. 출력된 개표록과 집계록에 이상이 없는지 재차 확인 후 지역본부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지역본부 선관위원의 서명 후 완성된 개표록·집계록은 즉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전달해야 합니다.

07 당선자 결정 공고

민주노총

-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지역본부 현장투표 개표결과와 전자투표 개표결과를 합산한 각 선거구 별 전체 투표 결과를 각 선거구에 통보합니다.
-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의 선거위는 당선자 결정 공고문_서식77호 을 선거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산별노조(연맹)에 당선자 결정 공고문 파일을 배포합니다.

산별노조 (연맹)와 지역본부

이를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단위조직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일부재투표

선거사무



일부재투표 개요

- 지역본부의 현장투표 개표 과정에서 일반적인 무효표와는 별개로,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봉인·봉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선거인명부에 임의로 추가된 선거인이 있는 경우, 투표록 또는 선거인명부보다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가 더 많은 경우 등으로 인해 무효 처리된 숫자가 민주노총 임원 또는 지역본부 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11/30(목) ~ 12/4(월) 18:00까지 해당 투표소에 한한 재투표를 공고합니다.
- 민주노총 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정 지역본부 임원 당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재투표 공고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직접 합니다.
- 일부재투표는 현장투표에서 모바일(부득이한 경우ARS)투표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일부재투표 공고는 11월 28일(화)~29일(수) 중 의결하여 11월 29일(수) 내에 공고됩니다. 단, 각 선거구의 당락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부재투표 기간을 줄여서 공고할 수 있으며, 만약 연장투표가 있을 경우 일부재투표 의결 및 개시일은 순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재투표일은 공고된 날짜 중 하루(1일)에 한합니다.

01 현장투표 개표 시 처리

지역본부

- 서명부 분실, 대규모 대리서명, 대규모 무더기표 등 발생 시 지역본부 선관위원회의 판단으로 투표소 전체를 기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장투표 개표 시 일부재투표 사유 원인이 되는 투표함 유·무효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봉인·봉쇄되어 있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

- ① 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에서 투표함 덮개의 봉인상태가 명백히 훼손된 경우 투표함을 전부 무효로 봅니다.
※ 단,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용 스티커 부착단계에서 오류·흡결이 발생하였으나, 단순한 착오·과실에 의한 경미한 경우, 투표함의 이송·보관 과정에서 투표함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더라도 투표함의 봉인·봉쇄상태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로 봅니다.
- ② 투표함이 분실된 경우, 봉인훼손 투표함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선거인명부 서명자보다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가 더 많은 경우

- ① 출력 선거인명부에 '임의기재되어 서명한 숫자' 를 세어 이를 개표상황표에 '임의등재' 로 기록합니다.
- ② 서명자보다 투표용지를 더 교부하거나 교부용지보다 투표함 내 투표용지가 더 많은 경우 '용지초과' 로 판단, 개표상황표의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용지초과' 가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선거인명부 서명부가 미회수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 ① 선거인명부 자체가 미회수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투표소 전체를 기권 처리합니다.
- ② 회수된 선거인명부를 위법 선거인명부로 의결할 경우 투표소 전체를 기권 처리합니다.
 - ※ 단, 대리서명이 다수 포함된 선거인명부 위법성 판단은 반드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합니다.
- ③ 선거인명부 중 일부가 미회수 또는 분실된 경우 미회수 및 분실된 부분에 한해서 재적인원 전체를 기권 처리하고 나머지를 정상개표 진행합니다.
 - ※ 단, 투표함 개함 후 용지초과 처리합니다.

선거인명부가 둘 이상일 경우

- ① 하나의 투표소에 둘 이상의 정규 선거인명부가 있을 경우 정상 개표합니다.
 - ※ 단, 임의등재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정규 선거인명부와 더불어 보조적으로 현장 자체 선거인명부를 사용한 경우 정상 개표합니다.
 - ※ 단, 정규 선거인명부와 보조 선거인명부의 명단 및 선거인수가 일치할 경우에 한합니다.

※ 자세한 개표시 특이사례 처리 방침은 향후 배포될 개표업무안내서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02 일부재투표 의결과 공고 및 실시

민주노총

현장투표의 개표를 주관한 지역본부선관위가 11/27(월) ~ 29(수) 사이에 최종 보고한(만일 연장투표가 있을 경우 그 직후에 보고된) 개표록·집계록에 첨부된 비정상 무효표 수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무효표가 발생한 투표소에 한하여 일부재투표를 의결합니다.

민주노총

공고문_서식87호을 민주노총선관위 홈페이지에 11/29(수) 중 게재하고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단, 만일 연장투표가 있을 경우 이 일정은 순연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연맹)

- 이를 일부재투표 대상 투표소 관할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 지역본부는 현장투표의 일부재투표 일시장소를 취합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

단위조직

- 현장투표의 일부재투표 투표소를 관장하는 단위조직(투표구)과 시급히 소통하여 해당 현장투표의 일시장소(하루(1일)에 한합니다)를 취합해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 파일로 받은 공고문을 즉시 인쇄하여 게시하고 조합원에게 일부재투표를 알립니다.

공고문에 아래 사항이 안내 됩니다

1. 일부재투표일 : 2023년 11월 30일(목) 09:00 ~ 12월 4일(월) 18:00 중 1일
2. 일부재투표 일시 : 투표구(단위노조) 선관위 별도 공지 (단, 1일에 한함)
3. 일부재투표 장소 : 투표구(단위노조) 선관위 별도 공지
4. 일부재투표 개표일시 : 년 월 일() 18시 이후
5. 일부재투표 대상 투표소 : 첨부

※ 지역본부선관위와 협의하여 해당 투표소 선거인의 투표를 모바일투표로 바꿔서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투표일은 년 월 일() 하루 진행합니다.

재투표 일시 수립 불가 통보 투표구 · 투표소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지한 일정 내에 현장투표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지역본부 선관위 통지하는 단위조직(또는 투표구)은 해당 투표소의 재투표 참정권을 기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현장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뀌서 치르려는 투표구 · 투표소

- 일부재투표 시 해당 투표소 전체 선거인을 모바일투표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할 경우 지역본부가 해당 단위조직과 협의하여 서면 서식88호 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요청합니다.
- 민주노총이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해 직접 정정 조치합니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 현장투표→전자투표로의 정정사항까지 반영된 명부 중, 일부재투표 대상 투표소의 현장투표 명부에 한해 해당 지역본부가 내려받기-인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둘 것입니다.

단위조직

현장투표일에 지역본부로부터 추가 배부받은 투표용품 및 투표관계서류로 현장투표를 실시합니다. 필요 사무는 <선거일 기간 세부 선거사무 _ 현장투표>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

※ 단, 이 때 이미 무효표 수에 당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본부

현장투표로 일부재투표를 실시하는 투표소에 선거인명부 · 투표함 · 투표용지를 비롯한 투표관계서류를 배부합니다. 배부 방법은 본 투표 때 안내한 업무와 같습니다.

(투표함은 보관중인 투표함을, 투표용지는 보관중인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민주노총

전자투표일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필요 사무는 <선거일 기간 세부 선거사무 _ 전자투표>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

※ 단, 이 때 이미 무효표 수에 당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에 해당하는 문항은 제외합니다.

일부재투표 선거의 개표

일부재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사무는 <현장투표의 개표>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결선투표 선거사무



결선투표 개요

- 민주노총 임원 또는 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결선투표가 진행됩니다. 결선투표 일정은 현장투표 투표용지 제작→지역배부→현장배부 시간을 감안하여 12월10일(일)~12월 14일(목) _ 5일 간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
- 특정 지역본부 만의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지역본부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직접 공고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결선투표 일정공고는, 연장투표 또는 일부재투표 공고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결선투표의 문항(찬반, 또는 1~2위 문항)은 연장투표와 일부재투표의 개표가 완료되자마자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선투표는 투표율 과반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01 결선투표 공고

민주노총

11.27(월) ~ 29(수) 사이에 결선투표 사유가 있는 선거구를 의결하여 공고문_서식9호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11/29(수) 중에 게재하고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포합니다.

(단, 만일 연장투표 또는 일부재투표 공고가 있을 경우에 해당 공고와 본 공고가 함께 나갑니다. 이 경우 연장투표 또는 일부재투표 완료 및 개표 뒤에 재공고합니다.)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연맹)

이를 전체 단위조직에 즉시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단위조직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단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공고문의 투표 일시장소를 기재하여 공지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여러 형식의 공고문 파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니 해당 단위조직은 이를 출력하여 부착해도 됩니다.

※ 지역본부별로는 따로 공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아래 사항이 안내 됩니다

1차 투표 시 현장투표를 진행했던 투표구·투표소 선거인의 투표를 이번 결선투표 시에는 모바일투표(또는 ARS투표)로 바뀌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본부선관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02 결선투표의 실무준비 · 투개표

지역본부

단위조직(투표구)과 시급히 소통하여 해당 현장투표의 일시장소를 취합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

결선투표 일시 수립 불가 통보 투표구 · 투표소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공지한 일정 내에 현장투표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는 단위조직(또는 투표구)은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전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기존 현장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뀌서 치르려는 투표구 · 투표소

- 결선투표 시 해당 투표구 또는 투표소 전체 선거인을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본부가 해당 단위조직과 협의하여 서면_서식89호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요청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해 직접 정정 조치합니다.

민주노총

선거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위 현장투표→전자투표로의 정정사항까지 반영된 명부 중, 투표구·투표소의 현장투표 명부에 한해 해당 지역본부가 내려받기-인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둘 것입니다.

지역본부

현장투표의 투표구 또는 투표소에 선거인명부·투표함·투표용지를 비롯한 투표관계서류를 배부합니다. 배부 방법은 본 투표 때 안내한 업무와 같습니다. 단 관련 기간을 단축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별도 안내할 것입니다.

단위조직

현장투표일에 지역본부로부터 배부 받은 투표용품 및 투표관계서류로 현장투표를 실시합니다. 필요 사무는 <선거일 기간 세부 선거사무 _ 현장투표>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 단 관련 기간을 단축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별도 안내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자투표일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필요 사무는 <선거일 기간 세부 선거사무 _ 전자투표>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

개표

개표에 필요한 사무는 <현장투표의 개표>로 안내한 사무와 같습니다.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2023직선 주요 Q&A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8.28.)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의결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01 선거일정 등

- Q** 지역본부장 후보등록이 공고된 시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없을 때
- A** 후보등록 불발 등의 재선거 사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본부 운영위를 열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정한 결선투표일_12.10(일)~12.14(목) 을 선거일로 하여 지역본부 선거위가 재선거 공고하도록 의결하며 재선거 공고 시 후보등록 마감일은 지역본부 선거위가 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지역 본부장 후보 공보물은 지역본부 자체 인쇄 및 배부하도록 합니다.
- Q** 지역본부장 후보등록 마감일을 위원장 후보등록 마감일과 달리 정하려 할 경우
- A** 2020년엔 후보등록 기간을 늦춰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광역시 지역본부는 마감일을 달리 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전체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광역시 지역본부도 마감일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 Q** 산별노조(연맹) 위원장 등의 직선을 동시에 치르려 하는 경우
- A** 총연맹의 선거인명부 및 현장투표함, 그리고 전자투표 시스템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기본이나 사전 협의를 거쳐 투표기간, 투표방법 등을 이원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별노조(연맹)가 자체 의결하여 2023년 8월 말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신청 후 조건 등을 확인한 후 9월 22일 최종 확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산별노조(연맹) 선거의 공보물과 현장투표 투표용지는 해당 산별노조(연맹)가 별도로 제작 배부하도록 합니다.
- Q** 민주노총 지역지부 지부장 직선을 동시에 치르려 할 경우
- A** 총연맹의 선거인명부 · 현장투표함 및 전자투표 시스템 하나로 일원화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관할 지역본부가 자체 의결하여 2023년 8월 말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신청 후 조건 등을 확인한 후 9월 22일 최종 확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지부 선거의 공보물과 현장투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지부가 별도로 제작 배부하도록 합니다.(투표용지에 한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일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지역지부 부담)
- Q** 각 단위조직(단위노조) 대표자 등의 직선을 동시에 치르려 할 경우
- A** 전자투표 동시선거만 가능합니다. 총연맹의 선거인명부 및 전자투표 시스템 하나로 일원화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2023년 8월 말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신청 후 조건 등을 확인한 후 9월 22일 최종 확정합니다.

02 선거인명부 작성 · 등록 · 수정 · 정정

- Q** 선거인명부 엑셀파일 작성 세부방법 안내에 대해
- A** 명부 작성용 엑셀파일 양식을 비롯한 작성 세부방법은 8월 말 ~ 9월 초에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공문 첨부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선거관리시스템 사용 권한부여 및 선거인명부 등록·수정·정정 방법에 대해

A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한 선거인명부 등록 권한은 산별노조(연맹)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대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별노조(연맹)가 요청하고 중앙선거위가 승인하면 산별노조(연맹)의 산하(단위)조직에게도 명부등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의 판단은 산별노조(연맹)가 합니다.

A 각 산별노조(연맹) 담당자를 통해 선거관리시스템 사용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명부 등록 완료일(9.22) 전까지 산별노조(연맹)가 해당자를 모아 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가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Q 선거관리시스템 계정부여자의 웹 사용 권한 범위에 대해

A 명부를 등록한 담당자는 타 조직의 명부를 볼 수 없으며 특히 휴대전화번호 목록 조회·출력은 자기 조직 명부만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단위조직이 명부를 직접 등록한 경우라면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나 산별노조(연맹) 누구라도 선거인 휴대전화번호를 목록으로 조회·출력할 수 없습니다. 단, 중복번호 확인 및 휴대전화번호 수정을 위해, 단위조직의 상급단위인 해당 산별노조(연맹)에게는 조합원 1명을 선택해 개인별 정보를 확인하는 메뉴를 통한 해당인 휴대전화번호 확인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A 위와 같이 각 산별노조(연맹) 담당자 외에도 산별노조(연맹)가 승인한 단위조직 담당자에도 선거관리시스템 등록·수정·정정을 위한 권한(ID/PW)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대부분의 명부 수정 및 정정은 산별노조(연맹)가 아닌 해당 단위조직 담당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때문에 선거관리시스템 등록을 직접 할 단위조직 담당자 인적사항 통지는 필수입니다.

Q 선거인명부 확정 과정 시 복수의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에 대해

A 선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 휴대전화번호 중복번호 확인이 된 이에 한해, 2023년 10월 18일까지(선거인명부 누락자 최종 구제 개시일 전날)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와 해당 당사자조직 간 협의를 통해 하나의 소속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Q 10인 이하 단위조직의 투표방법에 대해

A 규정 상 10인 이하 단위조직은 현장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산별노조(연맹) 같은 지역의 다른 10인 이하 단위조직과 통합하여 단위조직을 재구성하여 명부를 작성·등록하거나 모바일·ARS투표를 해야 합니다. 단, 휴대전화 미소지자는 우편투표나 이메일투표를 채택하면 됩니다.

Q 선거일 기간 현장투표소 설치와 모바일 메시지·전화·이메일 송수신 모두 불가한 경우

A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항해가 예정된 일부 선원노조 조합원이나 구속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우편투표를 개방합니다. 우편투표용지는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인 11월 6일(월)까지 해당 선거인이 등재한 주소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Q 하나의 단위조직 내에서 여러 투표방법을 채택하려는 경우

A 하나의 단위조직이라도 단 하나의 투표방법으로 통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인명부 등록 시 투표방법별로 투표소를 나누면 나눈 투표소에 해당하는 선거인별로 여러 투표방법을 단위조직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 Q 대구에 있는 사업장인데, 제주의 조합원이 제주본부에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조합원이 대구본부로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A 관할 지역본부는 사업장 소재지 혹은 조합원 근무지 주소로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지역을 변경하려면 관할 지역본부 조정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제주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명부 작성 시 제주 투표구, 제주 투표소로 해당 조합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투표를 하려면 제주본부에서 대구본부로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을 해야 합니다.
- Q 선거인명부 항목에 ‘여성’ 이 있던데, ‘이주’ 조합원이나 ‘연령’ , ‘고용형태’ 등도 조사할 순 없나?
- A 매년 다양한 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고, 상시적인 조직현황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와 무관한 조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할당규정에 따라 가맹조직 별 여성할당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여성’ 조합원을 조사합니다. 이후 조사 항목을 늘리거나 상시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03 투표구(소) 선관위원

- Q 전자투표 채택의 경우 투표구(소)선관위원 명단 제출의 기준
- A 현장투표 채택이 아닌 전자투표 채택의 경우도 투표구(소)선관위원 명단을 정하여 산별노조(연맹)를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2023년 10월 25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단위조직(또는 투표구) 전체가 전자투표인 경우 2인 이상을 정해야 하며, 단위조직(또는 투표구)의 일부 투표소가 전자투표인 경우는 그 투표소마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전자투표 관련 각종 실무 창구일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역 선관위가 배부하는 공보물 수령 주체입니다.
- Q 현장투표 채택 시 1회 투표이고 1개 장소임에도 여러 투표함이 필요한 경우
- A 1회 투표이고 1개의 장소임에도 실제 선거일에 여러 투표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령, 출근 시 사업장 출입문에 여러 투표함을 두고 투표하게 할 계획을 가진 곳이 해당), 필요한 투표함 숫자만큼의 투표구(소)선관위원을 정해야 합니다.
- Q 현장투표 채택 시 복수의 현장투표소 일시가 모두 다를 경우
- A 한 사업장 내 여러 투표장소가 설치되지만 각 투표장소마다 투표일시는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 내 한 명의 투표사무원으로 여러 투표소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04 선거인명부 확정(10.25) 이후 명부변경

- Q 투표일 전까지 명부의 재적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의 수
- A 10월 25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명단변경(추가 및 삭제)은 불가하며, 명부에 담긴 투표방법 변경 및 연락처 변경에 한해서만 수정할 수 있으며, 이 수정 시한은 각 시기마다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명단변경(추가 및 삭제)이 부분적으로 이뤄집니다.

- ①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부칙 특례 규정개정으로 인정받은 동시선거 가맹조직의 각 규정이 정한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따른 명단 부분 추가
- ② 투표구(소)선관위원 명단을 정하지 못한 투표구(소)의 현장투표→전자투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투표구(소) 선거인 재적 제외
- ③ 현장투표 일시장소를 정하지 못한 투표구(소)의 현장투표→전자투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투표구(소) 선거인 재적 제외
- ④ 조합탈퇴 또는 조합원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재적 제외
- ⑤ 선거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장투표소가 미설치되어 현장투표→전자투표 전환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투표구(소) 선거인 재적 제외

Q 근무지 변경에 따른 투표소 변경에 대해

A 현장투표의 경우 선거일 기간에 근무지 변경이 확실한 경우의 현장투표 장소 변경 명부수정 조치는 11월 7일까지입니다. 11월 7일 18시 이후로는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장투표소 변경이 불가합니다. 선거일인 11월 21일 ~ 27일 사이에 근무할 근무지가 유동적인 것이 유력할 경우 처음부터 전자투표 방법으로 명부 등록해줄 것을 권장합니다.

A 현장투표든 전자투표든, 선거인의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는 경우 이메일투표로 투표방법을 변경하여 선거인명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수정 조치는 11월 13일까지입니다.

Q 선거인명부 확정 후 휴대전화번호 추가 불가

A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휴대전화번호를 신규·추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현장투표구(소) 투표 일시장소 보고가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모바일·ARS로 전환될 때, 보고된 일시에 현장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긴급하게 모바일·ARS로 전환될 때 전화번호가 없는 선거인은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명부 확정일 전에 모든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A 확정된 선거인명부 중 기존 휴대전화번호가 수정될 수 있는 경우는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명단 취합보고 기간(11/1~11/13)입니다.

A 변경기간이 종료된 후 모든 전자투표 선거인에게 등재 확인과 투표 안내를 모바일메시지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Q 전자투표 방법의 현장투표로의 투표방법 명부 전환에 대해

A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모바일·ARS방법의 현장투표로의 전환 불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0년 선거 때 문제 없이 전자투표 시스템이 가동된 바 있어 전자투표의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현장투표로 전환 시 추가되는 사무 과중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Q 현장투표 직전 당일 현장투표소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

A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가령, 야외장으로 예고했으나 날씨 등의 이유로 실내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본부 선관위에 단위조직이 변경장소를 즉시 통지하고, 또한 즉시 선거인에게 변경장소를 공고하면 됩니다. 이 때 공고방식은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한 공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명부변경은 없습니다.

05 후보자 인쇄공보물(포스터와 정책자료집)

Q 공보물의 현장 배부 방법에 대해

A 포스터의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단위조직에 직접 발송할 예정입니다.

A 정책자료집의 경우,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에 발송하여 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이 해당 산하 단위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이 없는 단위조직에 제대로 배부될 수 있는 체계를 10월 말까지 세부 마련하겠습니다.

A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포스터 및 정책자료집 발송 배부 과정에 모든 투표구선관위원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인쇄 공보물 배부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며, 동시에 모든 선거인에게 공보물이 게재된 선관위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A 사전 협의를 통해 동시선거를 하는 가맹조직의 공보물과 민주노총 직선 공보물의 합배송도 가능합니다.

06 선거운동 기간과 합동유세

Q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에 대해

A 후보등록 기간인 10월 22일 ~ 26일 사이에 선거운동안내서를 파일로 별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을 요약한 안내 카드뉴스도 발행 배포할 예정입니다.

Q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제출과 개인홍보물 승인절차 등에 대해

A 후보등록 기간인 10월 22일 ~ 26일 사이에 선거공보물 제출안내서 및 개인홍보물 승인절차 및 활용 안내서를 파일로 별도 만들어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포스터 편집 규격, 정책자료집 편집 규격, 유세영상 분량, 그 외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물 규격 등과, 개인홍보물 승인 절차 및 활용 시 유의사항 및 제재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Q 지역 순회 합동유세에 대해

A 후보등록 기간인 10월 22일 ~ 26일 사이에 권역별 순회 합동유세 최종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기획서)을 미리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확정 과정에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할 것입니다.

Q 지역본부장 후보 선거운동 통제·감독 및 제재 시 지역본부 선관위의 역할

A 지역본부장 선거운동 통제·감독 및 제재의 모든 권한은 지역본부 선관위가 갖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지역본부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직접 유권해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가 경선일 경우에 한해, 유권해석 및 제재 조치를 지역본부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7 현장투표 준비와 현장투표 기간

Q 출력 선거인명부에 대해

A 지역본부가 최종 출력하여 현장 배부하는 현장투표 선거인명부에 조합원 아님에 따른 삭제 외에는 어떤 추가 기록도 금지한다는 안내문, 복사금지 안내문 등과 함께 어떤 칸도 임의로 만들지 못하도록 아래 여분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Q 1회 1개 투표장소에 여러 투표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명부와 투표함 배부

A 1개의 장소임에도 실제 선거일에 여러 투표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령, 출근 시 사업장 출입문에 여러 투표함을 두고 투표하게 할 계획을 가진 곳이 해당), 필요한 투표함 숫자만큼의 투표구(소)선관위원 숫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그 숫자만큼의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을 추가 출력 및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명부의 복사는 절대 금지합니다.

Q 투표중단 없이 현장투표를 2일 이상 하는 경우 투표함 배부

A 가령, 3교대 조합원을 고려하여 2일 이상 투표를 실시하면서도 투표함 봉인 등의 투표중단 없이 투표구(소)선관위원이 교대로 관리할 경우에는, 투표일시를 1회로 간주하여 투표함을 배부합니다.

Q 현장투표함·명부 등을 선거일 전에 현장에서 끝내 배부받지 않을 시

A 현장투표를 진행할 투표구(소)가 현장투표함·선거인명부를 비롯한 투표관계서류 등을 끝내 배부 받지 않고 해당 선관위원 연락도 두절될 경우, 현장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치(해당 단위조직과 협의하여 전자투표로 전환, 단,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재적에서 제외)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Q 각 현장투표소 별 기표소와 기표구 준비에 대해

A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현장투표소에서 쓸 기표소와 기표구를 따로 제작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각 단위조직마다 별도로 설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표구는 'Ⓢ' 표 기구 또는 '○' 표 기구(볼펜 앞부분을 제거한 용기도 인정)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기표 시 기표구의 뒷부분으로 기표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취해놔야 합니다. 단, 기표구로써 기재를 위한 필기구(볼펜과 싸인펜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및 민주노총 지역지부의 명부·투표함 일원화

A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와 민주노총 지역지부의 경우, 민주노총이 배부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또한 민주노총이 배부한 하나의 투표함으로 일원화합니다. 단, 투표용지의 경우 각 산별노조(연맹)와 지역지부가 따로 제작하는 만큼, 민주노총 위원장 투표용지 색상 및 16개 지역본부장 투표용지 색상과 구분되도록 다른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Q 명부에 서명은 했으나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 처리

A 개표 시 유효표, 무효표, 기권 등 3개로 나눠 집계되며, 이 경우 무효 집계 처리하면 됩니다. 기권은 명부 서명 자체를 하지 않은 이(즉 투표용지에 반영되지 않는 이)로 명확히 합니다. 본인인증은 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전자투표도 마찬가지로 무효 집계 처리합니다.

Q 선거일 기간 현장투표율의 매일 16시 취합 · 보고의 효율적 방법에 대해

A 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 산하 단위조직은 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이 취합하여 지역본부에 보고, 그렇지 않은 단위조직은 지역본부가 직접 취합합니다. 모든 단위의 재적조합원수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으므로, 각 투표소별 매일 16시 현재 투표자수 취합 보고로 쉽게 종합될 수 있는 웹 시스템을 11월 초순까지 준비하여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Q 현장투표 완료된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회송(지역본부로 반납)에 대해

A 선거일 최종 종료 전에 현장투표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된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지역본부로 회송(반납)해도 됩니다. 이 경우, 투표구(소)선관위원이 직접 지역본부에 운반하고 인수인계대장에 날인해야 합니다. 투표구(소)선관위원이 위임한 것이 확인되는 단위조직의 일반 노조간부가 인계자여도 인정합니다. 단, 회송(반납) 시 퀵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이용은 불가합니다.

A 관할 지역본부 조정을 거쳐 투표구 소재 지역이 아닌 타 지역본부 관할로 조정된 경우, 투표함 회수(반납)를 조정된 지역본부로 해야 합니다. 조정된 지역본부가 멀다고 하여 소재 지역본부로 회수(반납)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Q 소규모 사업장 여러개를 모아 하나의 현장투표소로 등록하고, 투표소 선관위원이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A 하나의 투표소에서 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해 여러 차례의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각 장소별 ‘현장투표 일시장소’ 를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 장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반드시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다른 장소에서는 새 투표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08 전자투표

Q 모든 전자투표의 문항설계 및 문항순서에 대해

A 모든 전자투표의 각 문항에는 ‘기표하지 않음’ 문항을 넣어서 개표 집계시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모든 전자투표의 문항 순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등 →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등 →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위원장 등 → (동시선거하는) 민주노총 지역지부장 등 → (동시선거하는) 단위노조(단위조직) 대표자 등의 순입니다.

Q 모바일투표 전 본인인증에 대해

A 선거인마다 하루에 [인증요청] 버튼 클릭 횟수 한도는 5회이며, 이 한도 초과시에도 해당일 투표는 불가하며 다음날에 해야 합니다. [인증요청] 버튼 터치부터 3분 이내 인증코드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 실패 1회로 간주됩니다. 입력 실패 5회 시 인증 요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웹페이지 종료 후 재접속 시, 인증기회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인증절차를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인증코드 메시지가 지연되지 않게 실시간 발송되도록 설계했습니다.

Q ARS투표 전 본인인증에 대해

A ARS 전화 안내에 따른 숫자 4자리를 누르면 본인인증으로 같습니다. 그 뒤 전화 속 안내에 따라 기표행위를 하면 됩니다.

Q 단, 30초 이내에 위 인증코드(숫자 4자리)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재입력 1회 안내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입력할 경우 통화 종료되어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또한 인증코드(숫자 4자리) 입력 5회 실패 시에도 당일 투표권은 상실되며 통화연결 후 본인인증 전 통화종료 시에도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당일 투표권 상실 시 다음 날 안내전화 받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Q ARS투표 유효시간에 대해

A 각 문항별 응답시간은 30초로 제한되며 재질문 1회 후에도 미응답 시 통화가 종료되어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당일 투표권 상실 시 다음 날 안내전화 받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Q 이메일투표 전 본인인증에 대해

A 위 [인증메일받기] 버튼 클릭은 한국시간 자정(밤 12시) 기준 1일 2회가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한국시간 기준 그 다음날에 [인증메일받기] 버튼 클릭하기를 해야 합니다.

Q 이메일투표 유효시간에 대해

A 선거일 7일 내내 24시간 투표가 가능합니다(선거일 마지막날은 한국시간 기준 18시 마감). 단,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창을 접속한 뒤 1시간 이내 투표를 완료해야 하며, 시간 초과 시 한국시간 기준으로 하는 당일 투표권은 상실됩니다. 당일 투표권 상실 시 한국시간 기준 다음 날에 [인증메일받기] 버튼 클릭하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Q 본인인증 후 이메일투표 도중 중단했을 경우

A 모바일투표 및 ARS투표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Q 카카오톡이 없는 경우 모바일투표 가능 여부

A 모바일 투표 시 투표 주소(URL)는 카카오파워링크로 먼저 발송합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을 차단한 경우, 즉시 문자메시지로 재발송합니다.

Q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 본인 인증 가능 여부

A 민주노총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통신사의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선거관리시스템에 가맹조직(단위조직)이 등록된 조합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고 있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09 선거일 기간 투표율 제고

Q 선거일 기간 투표율 공개 시스템에 대해

A 산별노조(연맹)별 민주노총 선거 투표율이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본부 별 민주노총 선거 투표율도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별노조(연맹) 및 지역본부별 현장투표율과 전자투표율 구분 공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A 산별노조(연맹) 및 지역본부 별 부여 계정을 통한 시스템 접속을 통해서도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별 투표율도 내부 공개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Q 단, 모든 내외부 공개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Q 선거일 기간 모바일투표와 ARS투표 안내 메시지 및 전화 발송번호에 대해

A 해당 시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명의의 전화번호 뿐 아니라 각 산별노조(연맹) 전화번호 및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로도 모바일투표 및 ARS투표의 모바일 메시지 및 안내전화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 각 산별노조 / 각 지역본부> 명의의 계정(채널)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Q 전자투표 미투표자 목록 제공에 대해

A 현장투표와 마찬가지로 미투표자를 확인해 투표 독려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들에게도 제공됩니다. 단위조직에만 제공하는 경우, 일부 단위조직에서 특정 후보자에게만 미투표자 목록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미투표자 목록 제공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해당 단위조직과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시에 제공합니다. 투표 독려는 해당 선거인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단위조직이 해야 합니다.

10 연장투표, 일부재투표, 결선투표 개표 시

Q 연장투표, 일부재투표, 결선투표 시 휴대전화번호 추가 등재 가능 여부

A 연장투표 · 일부재투표 · 결선투표 시 기존 현장투표를 전자투표(ARS 및 모바일투표)로 전환할 때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미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추가 등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본투표 시 현장투표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이후 연장투표 · 일부재투표 · 결선투표 시 전자투표로의 전환 용이성을 감안하여 최초 명부 등록 때 반드시 휴대전화번호 등재를 당부드립니다.

Q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와 민주노총 지역지부만 연장투표를 할 경우

A 민주노총 전국 선거구와 각 지역본부 지역선거구 과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또는 특정 지역지부가 과반 투표율이 되지 않아 연장투표를 돌입할 경우, 해당 선거구와 동일 투표함을 쓴 곳은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 개표도 순연합니다.

Q 투표함 회수 과정에서 투표함 분실이 확인된 경우

A 개표를 위한 현장투표함 회수를 시작하였으나 미회수 투표함이 있어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소의 해당 투표함이 분실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투표함은 무효 처리하며 일부재투표 판단의 사유가 됩니다.

Q 유효표/무효표 분류의 기준 및 일부재투표 사유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A 11월 중순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개표사무안내서에 담아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Q 개표결과의 효율적인 중앙 보고에 대해

A 11월 중순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개표결과 중앙보고 웹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개표사무안내서에 담아 지역본부에 파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Q 선거 도중, 혹은 연장투표 시 현장투표 투표소의 전자투표로 전환 가능 여부

A 이미 현장투표를 진행한 선거인이 있다면 전자투표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Q 동시선거를 진행하는 산별노조(연맹)의 개표 시 민주노총 선거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

A 민주노총의 '일부재투표' 기준에 따라 개표 및 집계를 하는 조건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Q 지역본부가 행하는 공보물 발송비, 투표함 이동비, 개표장소 대여비 등

A 지역본부가 행하는 공보물 발송비와 개표장소 대여비는 실비로 중앙 지원합니다. 지역본부가 행하는 선거인명부, 투표함, 투표용지, 투표관계서류 등의 현장배부 이동비의 경우, 차량대여 및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비로 중앙 지원합니다. 순회 합동유세의 경비 중 대관료를 비롯한 제반비용의 중앙 지원 기준도 마련해 집행하겠습니다.

Q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외 조직단위의 별도 모바일 메시지 발송 요청 시

A 선거일 기간 모바일투표와 ARS투표 모바일 메시지 및 전화 발송번호를 지역본부 또는 산별노조(연맹)로 하여 발송하는 것 이외에, 명부 등록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별도 모바일 메시지 발송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소속 연맹의 산별 전환 시 전환을 하지 못한 미전환 사업장의 선거권 여부

A 현재 산별노조 소속은 아니지만,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맴비를 납부 중이라면 해당 산별노조를 통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